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2011. 6

한국정치학회

2011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역보고서

연구용역과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원: 가상준(단국대)

공동연구원: 김준석(동국대)
유성진(이화여대)

연 구 기 간: 2010. 4. 6. - 2010. 6. 30.

목 차

<요약문> ····· 1

Ⅰ. 서론 ····· 6

Ⅱ.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과 선거 참여 ····· 9

1.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 ····· 9

2.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 11

3. 정치참여의 일반이론과 비정규직 근로자 ····· 14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 20

Ⅳ.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투표행태 설문조사 ···· 35

Ⅴ. 정책적 제안 ····· 73

Ⅵ. 결론 ····· 81

<참고문헌> ····· 86

<부록> 설문문항 ····· 89

<표 차례>

<표 3-1>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일 당시 귀하의 근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 21
<표 3-2>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신 분만) 2008년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시 귀하는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 21
<표 3-3> (투표했다고 응답하신 분만)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였습니까? ····· 22
<표 3-4>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22
<표 3-5>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하신 분만) 참여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23
<표 3-6>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신 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23
<표 3-7>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일 당시 귀하의 근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 24
<표 3-8>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신 분만) 2010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귀하는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 25
<표 3-9> (투표했다고 응답하신 분만)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였습니까? ····· 25
<표 3-10>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26
<표 3-11>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하신 분만) 참여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26
<표 3-12>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신 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27
<표 3-13> 귀하가 다니는 직장은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 27
<표 3-14>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28

<표 3-15>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28
<표 3-16> 투표참여 보장과 관련하여 5번과 6번과 같이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28
<표 3-17>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분만) 상기 법 규정이 비정규직의 투표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9
<표 3-18>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0
<표 3-19>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 30
<표 3-20> 나에게 있어 투표만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30
<표 3-21> 현행 선거제도상 선거일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귀하의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 31
<표 3-22> 현행 선거제도상의 투표시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궐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투표개시시간을 앞당기거나 투표마감시간을 뒤로 미루는 방법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한다면 귀하의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 32
<표 3-23> 현행 선거제도는 선거일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전에 일정기간 동안 투표소를 설치하여 먼저 투표할 수 있게 한다면 귀하의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 32
<표 3-24> 아래의 보기 중 귀하의 투표참여에 가장 도움이 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3
<표 4-1>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일 당시 귀하의 근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 36
<표 4-2>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여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37
<표 4-3> 투표참여방식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39
<표 4-4> 투표참여 불가능/기권 여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40
<표 4-5> 투표참여 불가능 이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42
<표 4-6> 투표기권 이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43
<표 4-7>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일 당시 귀하의 근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 46
<표 4-8>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여부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 47
<표 4-9> 투표참여방식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 48
<표 4-10> 투표참여 불가능/기권 여부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 50
<표 4-11> 투표참여 불가능 이유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 51
<표 4-12> 투표기권 이유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 52
<표 4-13>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 54
<표 4-14> 정치적 표현수단으로서의 투표의 가치 ····· 55
<표 4-15> 응답자 직장의 선거일 유급 휴가·휴무의 보장여부 ····· 58
<표 4-16>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투표일 휴무 법적보장에 대한 응답자 인지여부 ····· 59
<표 4-17>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시간 보장에 대한 응답자 인지여부 ····· 60
<표 4-18> 현재의 법조항이 투표참여 보장에 도움이 되는가? ····· 62
<표 4-19> 현재의 법 규정이 비정규직 투표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67
<표 4-20>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 68
<표 4-21> 정책대안 1: 주민등록지 구·시·군내 설치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 ·· 69
<표 4-22> 정책대안 2: 선거일 투표시간 연장 ····· 70
<표 4-23> 정책대안 3: 선거일 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투표 허용 ····· 71
<표 4-24> 정책대안의 우선 선호 비교 ····· 72
<표 5-1> 투표참여 불가능 이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73

<표 5-2> 투표참여 불가능 이유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 73
<표 5-3> 응답자 직장의 선거일 유급 휴가·휴무의 보장여부 ····· 74
<표 5-4>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투표참여 보장에 도움이 되는가? ····· 75
<표 5-5>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규정이 비정규직의 투표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75
<표 5-6>「공직선거법」제6조 제3항 규정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77
<표 5-7> 「근로기준법」제10조 규정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77
<표 5-8> 두 규정에 대한 교차분석 ····· 77
<표 5-9>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귀하의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 79
<표 5-10> 아래의 보기 중 귀하의 투표참여에 가장 도움이 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79
<표 5-11> 투표개시시간을 앞당기거나 투표마감시간을 뒤로 미루는 방법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한다면 귀하의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 79
<표 5-12>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전에 일정기간동안 투표소를 설치하여 먼저 투표할 수 있게 한다면 귀하의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 80

<그림 차례>

<그림 2-1>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 12

<요약문>

- 현재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정치참여 불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고 있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적극적 협조와 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기술력을 통해 840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조사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음. 첫 번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실태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는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는 투표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치에 관련한 것임.

- 설문조사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치적 관심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해석상의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지만 조사결과 나타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율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여론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를 보였음.

- 이들의 투표참여율은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고학력층일수록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연령 등 사회적 변수에 있어서 일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행태조사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고용형태”에 있어서 ‘일용직/임시직’과 ‘파견/용역/도급’의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에 있어서는 100명 이하와 300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갖고 있는 직장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101~3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장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이 나타나 이들의 투

표참여에 고용조건과 관련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차이를 보여주는데, 일반 유권자 조사의 투표불참자들은 대부분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여 자발적 기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빈도수가 거의 65%에 달하였고, 이러한 양상은 모든 사회경제적 변수들에서 공히 높게 나타났으며, '일용직/임시직'과 '파견/용역/도급'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졌으며, 이러한 양상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음.

-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발적 선거기권 이유는 일반 유권자들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들에게서도 '정치적 무관심'이나 '선호후보 없음,' 그리고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다수 나타났음.

-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발적 기권에 있어서는 일반 유권자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고용조건과 경제적 이유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이와 같은 결과는 고용조건이 투표참여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두드러지게 겪고 있는 하나의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결국 이렇듯 특수한 장애물이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인 대의민주주의의 구현을 저해하고 있음을 의미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이 개선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 행위 자

체에 대해 그다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투표율이 개선될 리는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전제조건임.

- 본 연구는 이를 '투표에 대한 가치부여'와, '대안적 정치적 표현수단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았음. 설문결과 전체의 80% 가량의 응답자가 '(많은 이들의 투표와는 관계없이) 내가 던지는 한 표는 중요하다'고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투표를 정치적 의사표현의 유일한 수단으로 간주하는' 응답자도 71.9%에 이르렀다. 이는 비정규직 유권자 중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상당수는 제반 제약요건이 개선되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줌.

-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받는 노동자가 22.7%에 불과한 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임. 무려 77.3%의 노동자는 투표 참여에 있어 유무형의 제약을 받고 있었음.

- 특히, 일용직·임시직, 시간제 등의 경우 어느 정도 투표일 휴무를 보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파견·용역·도급직 종사자나 심지어 계약직·기간제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투표일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시사점이 큼. 비정규직에게 투표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노동지위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제약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임.

-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의 초석이 되어야 할「공직선거법」제6조 제3항과「근로기준법」제10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발견할 수 있음. 관련 조항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반을 훨씬 넘을 뿐 아니라(63.7%, 64%),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투표참여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음(52.7%). 그

이유로 법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도 고용주에 이를 요구하기 힘들거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음.

-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 무엇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고용자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거나 근로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거나, 관련 법규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적었음. 조사자의 절반이 넘는 54.2%가 제도개선이나 관련 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하였음.

- 응답자에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의 효용을 물은 질문에는 선거일 투표시간 연장이나,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방안 보다, 주민등록지 구·시·군내 설치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 하는 방안이 훨씬 높은 지지를 받았음. 이는 '시간이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다는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면에선 유권자의 주민등록에 의거 투표소를 일괄 할당함으로서 발생하는 불편이 상당함을 보여주며, 관련 개선책의 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냄.

-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함.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가 노동현장에서 엄격하게 준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가 고용주에 의해 지켜지지 않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요구하기 힘들기에 고용노동부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기명으로 요구(혹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와 함께 전화(대면) 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 한편, 현실적 논의되어야 할 개선책으로는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단위로 전산통합선거인 명부를 구축하도록 하고 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 전에 일정기간동안 투표소를 설치하여 먼저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사전투표제 실시 방안,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재·보궐 선거와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있음. 부재자 투표제의 신고요건 완화, 신고기간 연장, 부재자 투표소 설치범위 확대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특히 부재자 투표소의 설치 범위를 2천인에서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I. 서론

한국은 민주화 이후 많은 정치적 발전과 함께 경제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두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극단적 이념적 양극화, 경제적으로 심각한 빈부 격차, 사회적으로 집단 간 극단적 대립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사회통합과 성숙한 민주주의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일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원화와 다양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혁신(*innovation*)과 변화(*reform*)를 불러왔지만 소외된 계층을 확산시키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야기하였다. 이들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안정된 민주주의의 유지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good society*)의 건설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관용의 부재로 인해 쉽지 않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관심의 약화, 경제적 양극화 및 소외계층의 확산 등으로 인해 민주주의 유지에 필요한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 및 관심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투표율 하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과거 13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이 89.2%였는데 비해 2007년 실시된 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63.0%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1988년 13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이 75.5%였으나 2008년 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46.1%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투표율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무엇보다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혹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을 찾아내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경제적 원인으로 인해 정치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많은 편이다. 이들은 주요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임에도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로 선거참여가 어려우며, 재·보궐선거와 같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날에는 더더욱 참여가 쉽지 않

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중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경제, 사회적으로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선거참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금, 복지, 고용상태에 있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소득분배의 왜곡을 가져오고 있으며, 경기 침체기에 실업자를 양산하여 사회불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과제다. 한편, 이들이 처한 신분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선거참여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는 대의민주주의 유지를 위해 강조되는 정치참여와 대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조사와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으며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조사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경제적 이유와 많은 제약 여건상 투표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투표참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이들은 임금, 사회복지, 고용에 있어 불안한 위치에 있는 관계로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참여와 정치적 참여 즉, 투표참여가 매우 낮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투표참여는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 사회적 약자와 소외받는 계층에게 있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행위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선거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더욱 전달해야 함에도 이들의 투표참여는 이들이 처한 여건으로 인해 어려운 편이기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는 이들의 대표성이 낮다는 점을

의미하며 무엇보다 선거기제에 의해 운영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제 투표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무엇보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들의 투표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투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실태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는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는 투표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에 관련한 것이다.

연구는 이를 위해 먼저 제II장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은 어떠한지 알아보며 정치참여 이론을 통해 경제적 상황과 정치참여와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제III장과 제IV장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제V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논의해 본다.

II.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과 선거 참여

1.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

비정규직 근로자 개념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하고 있다.[1]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라 말할 수 있다.[2]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성(nonregular-ness)이라는 자체적인 정체성(defining criteria)으로 규정되지 않고, 노동자들 가운데 정규직의 정체성을 지니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잔여범주로 정의된다"고 하고 있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1; 6).[3]

통계청의 정규직/비정규직 구분과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단체의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에는 개념정의와 산정기준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통계청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상 고용형태에 따라 정의되는 한시적, 단시간, 비전형근로자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4]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

1) http://www.moel.go.kr/policyinfo/protection/main.jsp
2) 네이버 백과사전
3)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라기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성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4) 통계청 경활인구조사는 매월 실시하는 「본조사」와 연1회(8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가 있다(2007

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5] 시간제근로자는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말한다.[6]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근로자 종사자 지위에 따라 구분된 상용직, 임시직, 임용직 근로자 중 임시직근로자, 임용직근로자, 그리고 상용직근로자 중 부가조사상의 비정규직근로자를 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하면 정규직을 규정하는 네 가지 기준들 - 고용계약에 의거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서, 계약 기간의 제한이 없는 상용 피고용자이며, 전일제의 노동시간을 일하고, 사용 사업주

년부터는 3월과 8월 연 2회로 확대). 본조사에서는 근로자를 종사자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분류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고용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용직(1년 이상), 임시직(1월~1년), 일용직(1월 미만)으로 구분하고,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퇴직금・상여금 등을 지급받고 ②회사의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에만 상용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임시・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www.moel.go.kr/policyinfo/protection/ 참조 바람.

5)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비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6)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가정내근로자: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일일(단기)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와 고용 사업주가 동일한 직접고용 노동자 - 중 하나의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비정규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배되는 기준에 따라 임시고용, 단시간 노동, 간접고용, 특수고용의 하위범주로 분류한다.[7]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통계청과 노동계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2.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 노동시장의 심각성을 말해 주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림 2-1>은 2001년 이후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8] 조금씩 변화의 차이는 있지만 2001년과 비교하여 볼 때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

7) 노동계 비정규직 근로자(노동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1).

기준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구성/유형
고용계약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 고용	임시고용: 고용기간의 제한 ▪ 기간제: 계약기간 정함 ▪ 일반 임시직: 특정 사유/조건(사업, 결원, 계절)에 따른 한시적 고용
노동시간	전일제(full-time) 노동	단시간(part-time) 노동: 소정 노동시간 미만 노동 ▪ 상용파트: 상용직 단시간 노동 ▪ 임시파트: 임시직 단시간 노동
고용주체	고용자-사용자 일치	간접고용: 고용자-사용자 불일치 ▪ 파견노동: 사용업체 업무 감독, 파견업체 임금 지급 ▪ 용역노동: 용역업체 업무 감독, 용역업체 임금 지급 ▪ 호출노동: 일자리가 생길 경우 한시적 노동
계약유형	고용계약 체결	특수고용: 고용 계약 체결 않음 ▪ 개인도급: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노무 도급 제공 ▪ 재택도급: 가정(이웃집 포함)에서 작업 수행

8) 여기서 보여주는 비정규직 현황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근거한다.
한편, 노동계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따르면 2011년 3월 전체 임금근로자 17,065천명 중 정규직이 8,781천명 비정규직이 8,284천명으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48.5%다. 그러나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체 17,065천명 중 정규직이 11,294천명 비정규직이 5,771천명으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33.8%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5,771천명) 중 한시적근로자(3,370천명)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비전형근로자(2,311천명), 그리고 시간제근로자(1,532천명)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림 2-1>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자료: 통계청,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는 원인을 다음의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9] 첫째, 노동의 유연화라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전략적인 대응결과다. 종신고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고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에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기업의 대응이라는 점이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지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측면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이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이미 취업되어 있는 근로자인 '내부자'(ins)와 직장을 찾고 있는 실업자인 '외부자'(outs) 간의 차별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기득권을 가진 정규직인 내부자는 교섭을 통해 계속적 고용과 유리한 조건을 보장받으려 하기에 기업은 외부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여지가 없게 된다. 넷째, 노동시장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동관계법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도 비정규직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9)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원인은 김남훈(2008) 연구 38-47페이지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파악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된 시기와 일치하는데 비서, 운전기사, 사무보조 인력 등이 비정규직화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 실업률의 증가도 비정규직의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서 낮은 근로조건을 수용하는 근로자가 증가되게 되었다. 여섯째, 임시직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서비스 업종의 비중 증대가 비정규직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노동 서비스의 저장이 불가능하고, 총생산비에 대한 노동비용 비중이 높기에 탄력적 운영을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 자본의 유기성 구성의 고도화에 의한 것으로 기계화로 인해 노동자 일인당의 기계 장비율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장사무화, 사무자동화 등에 기인하여 필요로 하는 노동자의 수가 적어지게 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복지,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김남훈(2008)은 크게 일곱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10] 첫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하여 고용구조가 취약해지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둘째, 노동시장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는 2차 노동시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대기업과 같은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속적인 탐색을 위한 탐색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으로 투하된 인적자본에 대한 매몰비용(Sunk cost)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시되고 있다. 많은 근로자들이 취업에 대한 의사는 있으나 취업을 포기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들에 대해 투하된 인적자본에 대한 매몰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기업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 대신에 노동유연화에 대한 명시적인 비용으로 노동력에 대한 거래비용뿐만 아니라 조직몰입도 저하에 따른 팀워크나 집단 생산성 저하, 잦은 입·퇴사에

10) 47-55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따른 업무단절과 비효율 및 이에 따른 교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를 통하여 개별기업에서는 비용절감, 경기변동 위험 회피 등의 일시적 경쟁력을 확보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인건비로 유지되는 후진적인 사업구조를 가져와 산업의 구조조정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저해하게 되었다. 여섯째, 기업들의 과도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소득분배의 왜곡을 가져오고, 경기 침체기에 실업자를 양산하여 사회불안을 야기 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생산된 잉여인력이 비생산적인 산업부문이나 실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산업부문으로 집중되어 실업비용 등과 같은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3. 정치참여의 일반이론과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앞서 논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한편, 이들의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인해 선거참여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는 대표성 문제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대의민주주의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는 시민권이 구체적으로 행사되는 정치적 사건, 즉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표출되는 정치현상이다(Kymlicka and Norman 2000). 따라서 한 사회의 정치참여의 수준과 내용은 시민사회의 성숙 정도와 참여 민주주의의 수준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정치참여는 시민들이 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선택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일컫는다(Verba et al. 1995). 정치참여를 크게 선거참여(선거운동 포함)와 선거 외 정치참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선거참여란 투표와 선거기간 중 기부, 자원봉사, 정당행사 참가 등을 말하고, 선거 외 정치참여는 서명, 불매운동, 시위참가 등 선거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모든 정치관련 활동들을 의미

한다(Rosenstone and Hansen 1993).

전통적 정치참여 연구는 누가 어떤 경로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정치참여의 주요 결정요인으로는 ①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등 사회경제적 자원(socio-economic resources), ② 신뢰, 정치관심, 정치효능감 등 심리적 자원(psychological resources), ③ 사회연결망으로 표현되는 관계적 자원(relational resources) 등이 있다. 즉,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거나, 정치관심과 효능감 정도가 높거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Campbell et al. 1960; Lin 2000; McClurg 2003; Lewis-Beck et al. 2008; Putnam 2000; Wolfinger and Rosenstone 1980).

이러한 전통적 정치참여 결정요인들이 시민사회, 정부, 시장 사이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에 함의하는 바는 사회경제적 자원, 심리적 자원, 관계적 자원 등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상호간의 상승적인 관계를 구성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참여 불평등의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이 높고 부유한 사람일수록 정치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복잡한 정치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타인과 원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 높은 수준의 정치관심과 정치효능감을 지닐 가능성이 크다(Jacobs and Skocpol 2005, 31-32). 나아가 그들의 연결망은 보다 광범위하여 정치적 정보 및 기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득 및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연결망은 제한적이고 협소한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은 연결망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정치적 정보와 기회를 얻지 못한다(Burt 2005).

개인적인 수준에서의 차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자원의 불평등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목소리의 불평등을 낳게 된다.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누가 정

치에 참여하는가의 문제는 중요하다"(Verba et al. 1995, 227)는 말처럼 정책결정자들에게 도달하는 목소리가 부유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경향을 보인다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대표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훼손될 것이다.

사회경제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직업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보다 정치에 더 참여한다고 주장한다(Wolfinger and Rosenstone 1980). 이 모델은 단순명쾌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정치참여와의 안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 모델은 미국에서 지난 40여 년 동안 꾸준히 교육수준이 높아졌는데도 정치 참여의 수준이 오히려 하락하였다는 현상, 그리고 소득의 영향력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Brody 1978).

이에 정치심리학자들은 정치참여를 신념과 태도의 함수로 이해하여 심리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Campbell et al. 1960). 기존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는 심리적 자원들로는 사회신뢰(Putnam 2000),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Norris 1999), 정치관심 및 정치효능감 등을 들 수 있다(Finkel 1985). 신뢰수준이 높고, 정치관심 및 정치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험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이다.[11)]

정치참여는 사회경제적 자원과 심리적 자원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사회관계와 맥락, 즉 관계적 자원에 의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규모, 범위, 강도, 밀도, 동질성, 이질성 등 사회연결망 또는 관계적 자원의 특성에 따라 정치참여 수준도 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McClurg 2003). 한편 관계적 자원이 정치참여로 연

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심각한 결함은 심리적 자원과 정치참여의 관계를 역 인과관계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심리적 자원은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도 하지만 정치참여라는 행위를 통해서 증진되는 경향을 보인다.

결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특정 행위가 집단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반화된 기대나 규범이 될 경우에,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따돌림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구성원들 대부분이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지니고 친밀도가 높은 경우나 정치참여로부터 비롯되는 보상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참여에 대한 주변의 압력이 더욱 커지기 쉽다(Burt 1987; Gartrell 1987).

이와 같은 정치참여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이 본 연구의 대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치참여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앞에서 기술했듯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 및 다양한 정책적 결과,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representation)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Bartels 2008; McCarty et al. 2006).

무엇보다도 최근 선거정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유권자 집단의 정치참여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 집단에게서 행해지는 정치참여의 정도는 그들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치환될 개연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치참여에 필요한 개인적, 집단적 자원이 크게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정치참여의 실태를 조사하고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 집단적 자원의 결핍이 참여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이들이 정책결정과정의 외부자로서 남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된다.

미국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는 주로 기존의 사회경제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자원에 기반한 정치참여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경제적 불

평등의 악화는 정치참여 불평등을 가져오는 심리적 자원에 있어서의 격차 또한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12] 또한 정치참여를 위한 중요한 심리적 자원 중의 하나가 사회신뢰인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될수록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Uslaner 2002).[13]

이상과 같이 경제적 자원의 결여와 이에 기인한 정치참여의 불평등은 단순히 개인과 그 소속집단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영향력을 약화 혹은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한편, 정치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14]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정치참여 불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연구된 바가 없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치참여에 관한 기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전무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들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환경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존재하며 이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의 경우 근로환경에 있어서 다양한 차별금지법률들이 존재하며 이는 정치참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근로자들의 정치참여를 돕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이 강구된 바 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들이 투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작

12)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될수록 계층이동이 어려워지며 이는 개인의 정당한 노력을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하위계층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관심이나 효능감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Schattschneider 1960)

13)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일반화된 신뢰보다는 특수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 즉 나와 비슷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을 신뢰하는 배제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14) 또 다른 한편,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오히려 기존의 정치참여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즉,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됨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정치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입장 차이와 논란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소득재분배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중심적인 정치적 의제로 부각시킨다는 것이다(Meltzer & Richard 1981).

업장 내에 투표소를 설치한다든지 유권자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전체 노조 조직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파트타임근로자의 조직률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들의 정치적 요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적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어 2003년 범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2007년 7월 비정규직 대책 관련법 시행으로 이어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지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15] 이러한 외국의 사례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참고할 만하지만 경제적 상황과 제도적 틀이 다르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의, 사회적 통념,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한국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음을 자명한 사실이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집단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참여의 현실을 검토하고 참여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 이후에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인지 제시한다. 다음의 두 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들을 기술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에 있어서는 정치참여라는 주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시도인 만큼 복잡한 통계분석 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주로 행해질 것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치참여행태와 참여의 어려움 여부, 장애요인,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인식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15) 근로환경과 현황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태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본 연구로는 은수미 · 오학수 · 윤진호(2008)를 참조할 것. 미국, 일본의 사례는 2, 3장을 볼 것.

III.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2011년 약 2개월간 한국비정규노동센터[16]의 협조를 통해 수행되었고, 사회과학데이터센터[17]가 설문조사 수집 및 자료구축을 담당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 840명으로부터 설문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설문조사에 있어 가장 고려했던 점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와 지역별 분포였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65.6%(551명)가 남성이었고 34.4%(289명)가 여성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가 9.0%(76명), 30대가 15.5%(130명), 40대가 27.4%(230명), 50대가 32.4%(272명), 60대 이상이 15.7%(132명)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840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계약직·기간제 노동자가 37%(311명), 일용직·임시직 노동자가 32.9%(276명), 시간제·아르바이트 노동자가 3.2%(27명), 파견·용역·도급 노동자가 15.6%(131명), 특수고용 노동자가 11.3%(95명)이었다. 이들을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9.3%(330명), 인천·경기가 27.9%(234명), 대전·충북·충남이 6.3%(53명), 광주·전북·전남이 8.7%(73명), 대구·경북이 10.2%(86명), 부산·울산·경남이 6.7%(56명), 강원이 1.0%(8명)다. 840명의 설문조사 응답자들을 학력별로 구분해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8.2%(68명), 중학교중퇴/졸업/고등학교중퇴가 15.7%(132명), 고등학교 졸업이 39.5%(332명), 직업학교 및 대학중퇴가 6.4%(54명), 대학졸업이 26.3%(221명)이었다. 응답자들의 한 달 가구수입을 살펴보면 89만원 이하가 6.4%(54명), 90-119만원이 12.0%(101명), 120-149만원이 18.8%(158명), 150-199만원이 19.6%(165명), 200-249만원이 17.5%(147명), 250-299만원이 6.7%(56명),

16) 한국비정규노동센터(소장: 이남신)는 2000년 5월 20일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는 비정규 노동자의 '인권문제'이자, '노동문제'이며, 나아가 '사회문제'라는 인식하에 2000년 5월 20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비정규직에 관련한 각종 연구 활동 및 정책 자료의 발간 및 통계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센터홈페이지(http://workingvoice.net) 참조

17) 사회과학데이터센터(소장: 이남영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는 1997년 11월 1일 한국사회과학의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조사 및 통계자료의 수집, 연구자들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 자료탐색·통계분석·온라인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자세한 정보는 센터홈페이지(http://www.ksdc.re.kr/) 참조

300-399만원이 8.8%(74명), 400만원 이상이 8.7%(73명)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자들을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로 살펴보면 10명 미만이 15.0%(126명), 10-50명이 27.7%(233명), 51-100명이 15.0%(126명), 101-300명이 23.8%(200명), 301명 이상은 16.5%(139명)이었다.

구체적으로 각각 설문문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먼저 2008년 4월 9일 국회의원선거일 당시 응답자의 근로 상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0.7%가 비정규직인 상태였다. 다음으로 실업 상태가 13.3%, 그 뒤를 이어 정규직 상태가 6.0%를 차지하였다. 이를 미루어볼 때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다수 응답자의 근로 상태가 비정규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1>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일 당시 귀하의 근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비정규직	정규직	실업
전 체	(840)	80.7	6.0	13.3

<표 3-2>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신 분만) 2008년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시 귀하는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전 체	(678)	62.2	37.8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한 사람 678명을 대상으로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투표 참여 여부에 대해 물어 본 결과 과반수인 62.2%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해당 선거의 전체 투표 참여율인 46%와 비교해 근로 상태가 비정규직인 사람들의 투표 참여는 전체 유권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권자 여론조사는 실제 투표율과 비교해서 높은 투표참여율을 보인다. 때문에 62.2%와 46%간 차이의 많은 부분은

여론조사에서 흔히 발견되는 “과투표응답(over-reporting)”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이 조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비교대상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투표참여율이다.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투표율은 대개 75~85%정도의 범위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62.2%의 투표율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18]

<표 3-3> (투표했다고 응답하신 분만)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였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부재자 투표
전 체	(422)	98.8	1.2

투표에 참여한 422명이 어떤 방식으로 투표를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인 98.8%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1.2%만이 부재자 투표를 하였다.

<표 3-4>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사례수 (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전 체	(256)	64.1	35.9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256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외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알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결과 과반수인 64.1%가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

18)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를 통해 산출된 투표율의 몇 가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16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2002) 88.4%, 17대 총선 유권자 의식조사(2004) 78.9%, 한국선거학회 주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조사(2006) 63.7%, 17대 대선 유권자조사(2007) 78.5%, 동아시아연구원 2007년 대선 패널조사 92.1%, 2008년 총선 패널조사 84.7%, 2010년 제5회 지방선거패널조사 88%.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에 관한 투표율 역시 조사하였는데 각각 50.3%, 58.7%로 나타나 이 연구에서 조사된 투표율보다 총선의 경우 낮은 반면, 지방선거의 경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으나 이러한 차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대면면접(face-to-face interview)로 수행되었다는 점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외적 요인에 의해 투표 참여를 할 수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 외 35.9%의 응답자들은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는 내적 요인에 의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이유의 구체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 3-5>와 <표 3-6>를 통해 살펴보았다.

<표 3-5>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하신 분만) 참여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	임금이 (전액 혹은 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투표로 인해 동료에게 미치는 피해 때문에	개인적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	기타
전 체	(164)	42.7	26.8	9.8	1.2	3.0	14.6	1.8

먼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외적 요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고용계약상의 문제였다.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에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42.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투표를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임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26.8%를 차지하였다. 물론 이 중에는 개인적 일로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다음으로 많은 14.6%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여러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외적인 이유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된다.[19]

<표 3-6>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신 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9) 기타 의견으로는 주소지의 문제로 인해 투표소가 멀다는 의견과 선거 당시 응답자가 집행 유예 상태였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 분	사례수 (명)	직장 근무 때문에 피곤해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귀찮아서	기타
전 체	(164)	8.7	18.5	16.3	3.3	8.7	39.1	4.3	1.1

다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응답자 개인의 문제, 즉 내적 요인들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고(39.1%),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으며(18.5%)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16.3%)의 순으로 이유를 밝혔다[20]. 이들이 선택한 이유들은 정치 효능감과 무관심을 나타나는 항목들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고려하였을 때 정확한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정치 효능감은 낮고, 정치적 무관심의 정도가 높아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러한 정치 효능감과 정치적 무관심에 의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고자 한다면 그들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무관심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문 결과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설문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대체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결과들을 아래에서 살펴보았다.

<표 3-7>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일 당시 귀하의 근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비정규직	정규직	실업
전 체	(840)	86.0	3.0	11.1

20) 기타 의견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맡은 일이 직업장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먼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당시 응답자의 근로 상태를 물어 본 결과 지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상태인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86.0%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실업인 상태가 11.1%를 차지하였다. 이는 지난 선거와 비교하였을 때 비정규직 비율이 늘고 정규직과 실업의 비율이 준 수치다.

<표 3-8>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신 분만) 2010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귀하는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전 체	(722)	55.4	44.6

투표에 참여한 비율은 55.4%로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은 44.6%였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전체 투표 참여율이 54.5%인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비정규직인 상태의 유권자들의 참여가 전체에 비해 다소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21]

<표 3-9> (투표했다고 응답하신 분만)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였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부재자 투표
전 체	(400)	99.0	1.0

지방선거에서의 투표 방식은 국회의원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에 참여한 경우가 99.0%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해당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하였고, 소수인 1.0%만이 부재자 투표의 방식으로 투표에 참여하였다.

21) 앞에서 제시했듯이 이는 단순 수치비교이며 이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앞의 <표 3-2>의 해석과 각주 18번을 참고할 것.

<표 3-10>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 분	사례수 (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전 체	(322)	65.2	34.8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선거 때와 비슷하게 결과가 나타났는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요인을 외부에서 찾는 외적 요인이 6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지난 선거에 비교했을 때 1.1% 가량 높아진 수치이다. 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요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내적 요인의 비율은 지난 선거보다 줄어든 34.8%로 나타났다.

<표 3-11>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하신 분만) 참여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	임금이 (전액 혹은 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투표로 인해 동료에게 미치는 피해 때문에	개인적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	기타
전 체	(210)	41.9	27.1	6.7	1.4	4.8	14.3	3.8

먼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외적 요인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고용계약상의 문제였다.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에 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밝힌 응답자의 비율은 41.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투표를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임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27.1%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적 일로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14.3%, 그 외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가 6.7%, 투표로 인해 동료에게 미치는 피해로 인해가 4.8% 등의 순이었다[22].

22) 기타 의견으로는 응답자 본인이 집행 유예인 상태라 투표권이 없었다는 의견과 투표를 해야 하는 지역이 근무하는 지역과 달라서 투표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12>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신 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직장 근무 때문에 피곤해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귀찮아서	기타
전 체	(112)	10.7	18.8	17.0	7.1	11.6	33.0	0.9	0.9

다음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응답자 개인의 문제, 즉 내적 요인들의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고(33.0%),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으며(18.8%)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17.0%)의 순으로 이유를 밝혔다[23]. 역시나 앞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한 답과 비슷한 비율의 응답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정치 효능감과 정치적 무관심의 요인들이 이들의 투표 참여를 이끌지 않은 이유 중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13> 귀하가 다니는 직장은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전 체	(840)	22.7	77.3

응답자의 직장에서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하는지 물어본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77.3%였고 “예”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불과 22.7%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직장에서의 투표 참여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투표 참여 환경과 관련하여

23) 기타 의견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이 맡은 일이 직업장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관련법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표 3-14>「공직선거법」제6조 제3항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하다
전 체	(840)	36.3	63.7

<표 3-15> 「근로기준법」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하다
전 체	(840)	36.0	64.0

<표 3-14>, <표 3-15>는 응답자들에게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직장에서의 투표 참여에 대해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나타난 결과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비슷한 비율로 "알고 있지 못하다"의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직선거법」의 경우 응답자의 63.7%, 「근로기준법」의 경우는 응답자의 64.0%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 보장에 관한 규정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 라고 응답하였다.

<표 3-16> 투표참여 보장과 관련하여 5번과 6번과 같이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큰 도움이 된다	조금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종합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 체	(840)	28.0	19.3	32.7	20.0	47.3	52.7

또한 이번 설문을 통해 이런 규정들을 알게 된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규정이 투표 참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반을 살짝 넘는 52.7%의 응답자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나타내어 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3-17>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분만) 상기 법 규정이 비정규직의 투표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근로자가 법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법 내용은 잘 알고 있더라도 고용주에게 이를 요구하기 힘들어서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더라도 고용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전 체	(443)	15.6	41.1	43.3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443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을 때 다수의 응답자들이 근로자 자신들의 문제인 법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해서 보다는(15.6%) 고용주와 관련한 이유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용주와 관련한 이유로 근로자들이 설령 법 내용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고용주에게 요구하기 힘들고(41.1%), 또한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고용주가 근로자의 이러한 청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43.3%)에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투표 참여에 관한 규정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관련 규정에 대해 안내하여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고용주들이 먼저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설문 참여자들에게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 본 결과는 <표 3-18>과 같다.

<표 3-18>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 강화	비정규직 투표참여에 대한 고용자의 인식전환	투표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근로자의 노력	투표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관련 법 개정
전 체	(840)	17.0	19.8	9.0	54.2

우선 응답자들의 과반수인 54.2%가 투표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관련 법 개정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다음으로 고용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9.8%로 나타났다. 끝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앞서 이야기한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9>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구 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840)	4.5	13.9	21.4	60.1	18.5	81.5

<표 3-20> 나에게 있어 투표만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구 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840)	39.0	32.9	18.8	9.3	71.9	28.1

<표 3-19>와 <표 3-20>에서는 설문 대상자들의 정치 효능감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첫 번째 결과는 높은 정치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결과는 투표가 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표현수단이 막혀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 않다"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81.5%로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이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질문 "나에게 있어 투표만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표현에 대해 71.9%의 응답자들이 그렇다고 동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참여를 통한 정치참여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에 대해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표참여이고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21> 현행 선거제도상 선거일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귀하의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합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 체	(840)	56.3	29.4	10.2	4.0	85.7	14.3

투표 참여의 공간적 접근성이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투표소가 아닌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내의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

과 대다수의 응답자인 85.7%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3-22> 현행 선거제도상의 투표시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궐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투표개시시간을 앞당기거나 투표마감시간을 뒤로 미루는 방법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한다면 귀하의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합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 체	(840)	33.6	34.2	25.7	6.5	67.7	32.3

다음으로 투표 참여의 시간적 접근성이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행 선거제도상의 투표개시시간보다 앞당기거나 투표마감시간을 뒤로 미루는 방법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한다고 했을 때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공간적 접근성보다는 그 정도가 낮았지만 그래도 다수의 응답자가(67.7%)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3-23> 현행 선거제도는 선거일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전에 일정기간동안 투표소를 설치하여 먼저 투표할 수 있게 한다면 귀하의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합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 체	(840)	37.9	37.1	19.3	5.7	75.0	25.0

끝으로 투표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절차적 간소화를 제시했을 때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재자 신고의 절차를 생략하고 먼저 투표할 수 있게 한다면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공간적 접근성의 증대보다는 낮지만 시간적 접근성의 증대보다는 높은 수준의 비율인 75.0%의 응답자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3-24> 아래의 보기 중 귀하의 투표참여에 가장 도움이 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주민등록지 구·시·군내 설치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	선거일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투표 허용	기타
전 체	(840)	58.1	12.4	22.9	6.7

위에서 보여준 세 개의 결과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다음 질문에서도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표 3-24>는 세 가지의 측면을 놓고 어떠한 방안이 투표참여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물었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과반수가 공간적 접근성이 높을 때 즉,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내 설치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투표 참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 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투표참여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22.9%를 차지하였고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2.4%를 차지하였다[24]. <표 3-21, 22, 23, 24>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들의 투표 참여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은 그들에게 공간적인 편의성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그들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투표소가 아닌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내의 관할지 어디에서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면 근로자들이 투표 참여를 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24) 투표에 도움이 될 만한 방안 중 응답자들이 이야기한 기타 의견으로는 선거일 유급 휴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기타 의견 중 35.71%). 다음으로는 인터넷·핸드폰 등을 통한 전자 투표 의견이 17.86%, 사업장 내 투표소 설치 16.07%, 법 제도 강화(위반시 고용주 처벌) 8.93% 등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설문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투표 참여에 있어 전체 유권자에 비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엄연히 있다. 이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주요 요인에는 우선 무엇보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들이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법들을 강화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법에 대해 제대로 알린다면 그들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들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로 정치 효능감이 낮고 정치적 무관심의 정도가 높은 측면이 있는데 그들의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무관심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한다면 역시나 이들의 투표 참여를 높일 수 있게 되어 우리 사회에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IV.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특성에 따른 투표행태 설문조사

앞에서 우리는 비정규직의 투표행태와 정치적 인식에 관한 전체적인 패턴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전체적인 패턴을 조금 더 세밀하게 조망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인 변수들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적 특성이 정치참여도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그 일차적 목적이 선거에 참여정도와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인지 파악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국단위의 선거인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와 2010년에 있었던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행태를 조사하였다.

먼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행태에 관한 결과들을 살펴보자. 조사에 참여한 84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2008년 총선 당시에 비정규직 신분이었던 응답자는 전체의 80% 가량인 678명으로 파악되었고(<표 4-1>), 이들 중 422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62.2%의 투표율을 보였다(<표 4-2>).[25]

여기서 62.2%로 조사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율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여론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대략 20% 가량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개인적 성향으로 혹은 다른 현실적인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특정 유권자 집단의 낮은 투표율은 단기적으로는 해당 집단의 낮은 정치적 영향력, 장기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신뢰의 저하로 이어져 사회의 불안정 요인이 되기 쉽다는 점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낮은 투표율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25) 18대 총선의 실제투표율은 46.1%였으며,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투표율은 대부분 80% 안팎으로 나타난다.

<표 4-1>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일 당시 귀하의 근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비정규직	정규직	실업
전 체		(840)	80.7	6.0	13.3
성별	남성	(551)	83.5	5.3	11.3
	여성	(289)	75.4	7.3	17.3
연령	20대	(76)	43.4	11.8	44.7
	30대	(130)	76.9	11.5	11.5
	40대	(230)	81.7	5.7	12.6
	50대	(272)	90.1	2.9	7.0
	60세 이상	(132)	84.8	3.8	11.4
최종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8)	87.5	0.0	12.5
	초등학교 중퇴	(8)	100.0	0.0	0.0
	초등학교 졸업	(52)	80.8	3.8	15.4
	중학교 중퇴//졸업, ~ 고등학교 중퇴	(132)	93.9	3.0	3.0
	고등학교 졸업	(332)	86.7	3.6	9.6
	직업학교	(7)	57.1	0.0	42.9
	대학 중퇴	(47)	78.7	6.4	14.9
	대학 졸업	(221)	63.8	13.1	23.1
	응답거절	(33)	81.8	0.0	18.2
거주지역	서울	(330)	74.2	9.7	16.1
	인천/경기	(234)	85.5	5.1	9.4
	강원	(8)	62.5	0.0	37.5
	대전/충북/충남	(53)	96.2	0.0	3.8
	광주/전북/전남	(73)	69.9	4.1	26.0
	대구/경북	(86)	90.7	2.3	7.0
	부산/울산/경남	(56)	85.7	1.8	12.5
고용형태	계약직/기간제	(311)	73.6	8.0	18.3
	일용직/임시직	(276)	90.9	2.5	6.5
	시간제 · 아르바이트	(27)	59.3	3.7	37.0
	파견/용역/도급	(131)	71.8	11.5	16.8
	특수고용	(95)	92.6	2.1	5.3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126)	65.1	9.5	25.4
	10-50명	(233)	81.5	6.0	12.4
	51-100명	(126)	78.6	6.3	15.1
	101-300명	(200)	83.0	6.0	11.0
	301명 이상	(139)	92.1	2.9	5.0
	무응답	(16)	81.3	0.0	18.8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54)	64.8	5.6	29.6
	90-119만원	(101)	79.2	3.0	17.8
	120-149만원	(158)	84.8	1.9	13.3
	150-199만원	(165)	86.1	4.2	9.7
	200-249만원	(147)	87.8	4.8	7.5
	250-299만원	(56)	85.7	5.4	8.9
	300-399만원	(74)	75.7	10.8	13.5
	400만원 이상	(73)	64.4	19.2	16.4
	무응답	(12)	58.3	16.7	25.0

<표 4-2>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여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구 분		사례수 (명)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전 체		(678)	62.2	37.8
성별	남성	(460)	61.7	38.3
	여성	(218)	63.3	36.7
연령	20대	(33)	54.5	45.5
	30대	(100)	59.0	41.0
	40대	(188)	62.2	37.8
	50대	(245)	60.8	39.2
	60세 이상	(112)	70.5	29.5
최종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7)	42.9	57.1
	초등학교 중퇴	(8)	25.0	75.0
	초등학교 졸업	(42)	64.3	35.7
	중학교 중퇴/졸업, ~ 고등학교 중퇴	(124)	66.1	33.9
	고등학교 졸업	(288)	57.3	42.7
	직업학교	(4)	50.0	50.0
	대학 중퇴	(37)	56.8	43.2
	대학 졸업	(141)	70.2	29.8
	응답거절	(27)	77.8	22.2
거주지역	서울	(245)	64.5	35.5
	인천/경기	(200)	58.5	41.5
	강원	(5)	80.0	20.0
	대전/충북/충남	(51)	64.7	35.3
	광주/전북/전남	(51)	78.4	21.6
	대구/경북	(78)	52.6	47.4
	부산/울산/경남	(48)	60.4	39.6
고용형태	계약직/기간제	(229)	70.7	29.3
	일용직/임시직	(251)	54.6	45.4
	시간제 · 아르바이트	(16)	81.3	18.8
	파견/용역/도급	(94)	57.4	42.6
	특수고용	(88)	63.6	36.4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82)	61.0	39.0
	10-50명	(190)	65.3	34.7
	51-100명	(99)	64.6	35.4
	101-300명	(166)	52.4	47.6
	301명 이상	(128)	69.5	30.5
	무응답	(13)	61.5	38.5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35)	68.6	31.4
	90-119만원	(80)	66.3	33.8
	120-149만원	(134)	57.5	42.5
	150-199만원	(142)	50.7	49.3
	200-249만원	(129)	67.4	32.6
	250-299만원	(48)	70.8	29.2
	300-399만원	(56)	69.6	30.4
	400만원 이상	(47)	66.0	34.0
	무응답	(7)	71.4	28.6

<표 4-2>의 내용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율을 개인의 사회적 특성으로 구분지어 보여주고 있는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고학력층일수록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행태조사연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용형태"와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에 따른 차이들은 주목할 만한데, 총 5개로 구분된 고용형태 중 '일용직/임시직'과 '파견/용역/도급'의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에 있어서는 100명 이하와 300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갖고 있는 직장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101~3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장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이 나왔다.

"고용형태"에 따른 투표율의 차이는 '일용직/임시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수준으로 인한 "학력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파견/용역/도급'의 경우 학력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학력의 영향 보다는 현실적인 투표참여의 장애에 근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수"에 따른 투표율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10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작은 사업장 규모로 인해 구성원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투표참여 촉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며, 3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의 경우 투표참여 활성화에 노조의 영향력이 다소간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반면, 100~300명 정도로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두 가지 측면 모두 취약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참여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표 4-3>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절대 다수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참여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연령, 학력, 고용형태, 작업장 규모 등 사회적 변수들과 관련 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다만 "고용형태"에서 '시간제・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서 부재자 투표방식이 15% 정도로 나타났다.[26)]

26) 조사에 참여한 '시간제・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1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는 여기서 조사된 자료에 근거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고용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학 휴학생 등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라는 점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표 4-3> 투표참여방식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구 분		사례수 (명)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부재자 투표
전 체		(422)	98.8	1.2
성별	남성	(284)	98.6	1.4
	여성	(138)	99.3	0.7
연령	20대	(18)	100.0	0.0
	30대	(59)	98.3	1.7
	40대	(117)	98.3	1.7
	50대	(149)	98.7	1.3
	60세 이상	(79)	100.0	0.0
최종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3)	100.0	0.0
	초등학교 중퇴	(2)	100.0	0.0
	초등학교 졸업	(27)	100.0	0.0
	중학교 중퇴//졸업, ~ 고등학교 중퇴	(82)	98.8	1.2
	고등학교 졸업	(165)	97.6	2.4
	직업학교	(2)	100.0	0.0
	대학 중퇴	(21)	100.0	0.0
	대학 졸업	(99)	100.0	0.0
	응답거절	(21)	100.0	0.0
거주지역	서울	(158)	98.7	1.3
	인천/경기	(117)	97.4	2.6
	강원	(4)	100.0	0.0
	대전/충북/충남	(33)	100.0	0.0
	광주/전북/전남	(40)	100.0	0.0
	대구/경북	(41)	100.0	0.0
	부산/울산/경남	(29)	100.0	0.0
고용형태	계약직/기간제	(162)	99.4	0.6
	일용직/임시직	(137)	100.0	0.0
	시간제 · 아르바이트	(13)	84.6	15.4
	파견/용역/도급	(54)	98.1	1.9
	특수고용	(56)	98.2	1.8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50)	100.0	0.0
	10-50명	(124)	100.0	0.0
	51-100명	(64)	100.0	0.0
	101-300명	(87)	96.6	3.4
	301명 이상	(89)	97.8	2.2
	무응답	(8)	100.0	0.0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24)	95.8	4.2
	90-119만원	(53)	100.0	0.0
	120-149만원	(77)	98.7	1.3
	150-199만원	(72)	100.0	0.0
	200-249만원	(87)	97.7	2.3
	250-299만원	(34)	100.0	0.0
	300-399만원	(39)	97.4	2.6
	400만원 이상	(31)	100.0	0.0
	무응답	(5)	100.0	0.0

<표 4-4> 투표참여 불가능/기권 여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구 분		사례수 (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전 체		(256)	64.1	35.9
성별	남성	(176)	65.9	34.1
	여성	(80)	60.0	40.0
연령	20대	(15)	53.3	46.7
	30대	(41)	61.0	39.0
	40대	(71)	56.3	43.7
	50대	(96)	72.9	27.1
	60세 이상	(33)	63.6	36.4
최종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4)	100.0	0.0
	초등학교 중퇴	(6)	50.0	50.0
	초등학교 졸업	(15)	66.7	33.3
	중학교 중퇴//졸업, ~ 고등학교 중퇴	(42)	69.0	31.0
	고등학교 졸업	(123)	67.5	32.5
	직업학교	(2)	50.0	50.0
	대학 중퇴	(16)	62.5	37.5
	대학 졸업	(42)	50.0	50.0
	응답거절	(6)	50.0	50.0
거주지역	서울	(87)	63.2	36.8
	인천/경기	(83)	71.1	28.9
	강원	(1)	0.0	100.0
	대전/충북/충남	(18)	66.7	33.3
	광주/전북/전남	(11)	63.6	36.4
	대구/경북	(37)	45.9	54.1
	부산/울산/경남	(19)	73.7	26.3
고용형태	계약직, 기간제	(67)	52.2	47.8
	일용직, 임시직	(114)	70.2	29.8
	시간제 · 아르바이트	(3)	33.3	66.7
	파견, 용역, 도급	(40)	70.0	30.0
	특수고용	(32)	62.5	37.5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32)	62.5	37.5
	10-50명	(66)	65.2	34.8
	51-100명	(35)	60.0	40.0
	101-300명	(79)	68.4	31.6
	301명 이상	(39)	56.4	43.6
	무응답	(5)	80.0	20.0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11)	54.5	45.5
	90-119만원	(27)	66.7	33.3
	120-149만원	(57)	63.2	36.8
	150-199만원	(70)	72.9	27.1
	200-249만원	(42)	64.3	35.7
	250-299만원	(14)	50.0	50.0
	300-399만원	(17)	64.7	35.3
	400만원 이상	(16)	50.0	50.0
	무응답	(2)	0.0	100.0

앞의 <표 4-2>에서 62.2%로 나타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율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와 비교해서 20% 가량 낮은 수치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차이는 '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가?'라는 의문의 제기로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표 4-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4>에 나타난 결과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놀라운 차이를 보여주는데, 일반 유권자 조사의 투표불참자들은 대부분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여 자발적 기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빈도수가 거의 65%에 달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양상은 모든 사회경제적 변수들에서 공히 높게 나타났으며, '일용직/임시직'과 '파견/용역/도급'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다.

그렇다면 이들의 투표참여를 저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투표참여가 불가능했던 이유를 조사한 <표 4-5>의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주로 작업장에서의 고용조건과 경제적인 이유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답한 응답자 중 42.7%는 그 이유를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라고 응답하였고, 26.8%는 "임금이 감액되기 때문에"라고 답하여 전체적으로 70% 가량이 이 두 가지 이유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가 불가능했다라고 이유를 제시한 응답자들은 전체의 14.6%에 그치고 있어 이들의 투표불참 이유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외적인 이유에 기인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4-5> 투표참여 불가능 이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구 분		사례수 (명)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	임금이 (전액/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동료에게 미치는 피해 때문에	개인적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	기타
전 체		(164)	42.7	26.8	9.8	1.2	3.0	14.6	1.8
성별	남성	(116)	39.7	35.3	7.8	0.9	4.3	12.1	0.0
	여성	(48)	50.0	6.3	14.6	2.1	0.0	20.8	6.3
연령	20대	(8)	12.5	0.0	0.0	0.0	0.0	62.5	25.0
	30대	(25)	44.0	24.0	16.0	0.0	0.0	16.0	0.0
	40대	(40)	35.0	27.5	12.5	2.5	7.5	12.5	2.5
	50대	(70)	41.4	35.7	8.6	1.4	2.9	10.0	0.0
	60세 이상	(21)	71.4	9.5	4.8	0.0	0.0	14.3	0.0
최종 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4)	0.0	100.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중퇴	(3)	0.0	100.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졸업	(10)	60.0	30.0	10.0	0.0	0.0	0.0	0.0
	중학교 중퇴//졸업, ~ 고등학교 중퇴	(29)	37.9	27.6	13.8	3.4	0.0	17.2	0.0
	고등학교 졸업	(83)	48.2	22.9	10.8	0.0	4.8	12.0	1.2
	직업학교	(1)	0.0	0.0	0.0	0.0	0.0	100.0	0.0
	대학 중퇴	(10)	40.0	30.0	10.0	0.0	0.0	20.0	0.0
	대학 졸업	(21)	33.3	14.3	4.8	4.8	4.8	28.6	9.5
	응답거절	(3)	66.7	33.3	0.0	0.0	0.0	0.0	0.0
거주 지역	서울	(55)	60.0	7.3	10.9	1.8	1.8	16.4	1.8
	인천/경기	(59)	25.4	45.8	5.1	0.0	1.7	18.6	3.4
	강원	(0)	0.0	0.0	0.0	0.0	0.0	0.0	0.0
	대전/충북/충남	(12)	50.0	41.7	0.0	0.0	0.0	8.3	0.0
	광주/전북/전남	(7)	42.9	14.3	28.6	0.0	14.3	0.0	0.0
	대구/경북	(17)	41.2	23.5	11.8	0.0	11.8	11.8	0.0
	부산/울산/경남	(14)	42.9	21.4	21.4	7.1	0.0	7.1	0.0
고용 형태	계약직, 기간제	(35)	37.1	14.3	14.3	0.0	2.9	22.9	8.6
	일용직, 임시직	(80)	27.5	47.5	8.8	1.3	3.8	11.3	0.0
	시간제 · 아르바이트	(1)	100.0	0.0	0.0	0.0	0.0	0.0	0.0
	파견, 용역, 도급	(28)	67.9	3.6	3.6	3.6	3.6	17.9	0.0
	특수고용	(20)	75.0	0.0	15.0	0.0	0.0	10.0	0.0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20)	30.0	10.0	40.0	5.0	0.0	15.0	0.0
	10-50명	(43)	25.6	46.5	2.3	0.0	4.7	16.3	4.7
	51-100명	(21)	33.3	33.3	4.8	4.8	4.8	19.0	0.0
	101-300명	(54)	61.1	24.1	7.4	0.0	1.9	5.6	0.0
	301명 이상	(22)	54.5	4.5	9.1	0.0	4.5	22.7	4.5
	무응답	(4)	25.0	25.0	0.0	0.0	0.0	50.0	0.0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6)	33.3	0.0	16.7	0.0	0.0	50.0	0.0
	90-119만원	(18)	61.1	16.7	0.0	0.0	0.0	22.2	0.0
	120-149만원	(36)	38.9	27.8	11.1	2.8	2.8	13.9	2.8
	150-199만원	(51)	45.1	39.2	3.9	0.0	3.9	5.9	2.0
	200-249만원	(27)	40.7	22.2	18.5	0.0	7.4	11.1	0.0
	250-299만원	(7)	57.1	0.0	14.3	14.3	0.0	0.0	14.3
	300-399만원	(11)	18.2	27.3	18.2	0.0	0.0	36.4	0.0
	400만원 이상	(8)	37.5	25.0	12.5	0.0	0.0	25.0	0.0
	무응답	(0)	0.0	0.0	0.0	0.0	0.0	0.0	0.0

<표 4-6> 투표기권 이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구 분		사례수 (명)	직장 근무 때문에 피곤해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귀찮아서	기타
전 체		(92)	8.7	18.5	16.3	3.3	8.7	39.1	4.3	1.1
성별	남성	(60)	6.7	21.7	15.0	1.7	10.0	38.3	5.0	1.7
	여성	(32)	12.5	12.5	18.8	6.3	6.3	40.6	3.1	0.0
연령	20대	(7)	14.3	0.0	42.9	0.0	28.6	0.0	14.3	0.0
	30대	(16)	0.0	18.8	25.0	0.0	12.5	37.5	6.3	0.0
	40대	(31)	19.4	16.1	16.1	3.2	3.2	38.7	0.0	3.2
	50대	(26)	3.8	26.9	3.8	3.8	7.7	46.2	7.7	0.0
	60세 이상	(12)	0.0	16.7	16.7	8.3	8.3	50.0	0.0	0.0
최종 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0)	0.0	0.0	0.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중퇴	(3)	0.0	66.7	0.0	0.0	0.0	33.3	0.0	0.0
	초등학교 졸업	(5)	20.0	60.0	20.0	0.0	0.0	0.0	0.0	0.0
	중학교 중퇴//졸업, ~ 고등학교 중퇴	(13)	7.7	15.4	7.7	0.0	0.0	61.5	7.7	0.0
	고등학교 졸업	(40)	7.5	17.5	17.5	7.5	10.0	32.5	5.0	2.5
	직업학교	(1)	0.0	0.0	100.0	0.0	0.0	0.0	0.0	0.0
	대학 중퇴	(6)	0.0	0.0	0.0	0.0	33.3	66.7	0.0	0.0
	대학 졸업	(21)	14.3	14.3	19.0	0.0	9.5	38.1	4.8	0.0
	응답거절	(3)	0.0	0.0	33.3	0.0	0.0	66.7	0.0	0.0
거주 지역	서울	(32)	6.3	21.9	15.6	6.3	6.3	37.5	6.3	0.0
	인천/경기	(24)	4.2	16.7	16.7	0.0	4.2	54.2	4.2	0.0
	강원	(1)	0.0	0.0	100.0	0.0	0.0	0.0	0.0	0.0
	대전/충북/충남	(6)	33.3	16.7	0.0	16.7	16.7	16.7	0.0	0.0
	광주/전북/전남	(4)	25.0	25.0	0.0	0.0	25.0	25.0	0.0	0.0
	대구/경북	(20)	5.0	15.0	20.0	0.0	15.0	40.0	0.0	5.0
	부산/울산/경남	(5)	20.0	20.0	20.0	0.0	0.0	20.0	20.0	0.0
고용 형태	계약직/기간제	(32)	6.3	9.4	28.1	0.0	12.5	37.5	3.1	3.1
	일용직/임시직	(34)	11.8	23.5	8.8	2.9	8.8	41.2	2.9	0.0
	시간제 · 아르바이트	(2)	0.0	0.0	0.0	0.0	0.0	100.0	0.0	0.0
	파견/용역/도급	(12)	0.0	25.0	25.0	0.0	8.3	41.7	0.0	0.0
	특수고용	(12)	16.7	25.0	0.0	16.7	0.0	25.0	16.7	0.0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12)	8.3	25.0	0.0	8.3	8.3	33.3	16.7	0.0
	10-50명	(23)	13.0	21.7	17.4	0.0	8.7	39.1	0.0	0.0
	51-100명	(14)	14.3	21.4	7.1	0.0	21.4	35.7	0.0	0.0
	101-300명	(25)	0.0	16.0	20.0	8.0	8.0	44.0	0.0	4.0
	301명 이상	(17)	11.8	11.8	29.4	0.0	0.0	35.3	11.8	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0.0	0.0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5)	20.0	20.0	20.0	0.0	20.0	0.0	20.0	0.0
	90-119만원	(9)	0.0	11.1	11.1	0.0	11.1	66.7	0.0	0.0
	120-149만원	(21)	9.5	19.0	9.5	9.5	0.0	42.9	9.5	0.0
	150-199만원	(19)	5.3	31.6	5.3	5.3	10.5	31.6	5.3	5.3
	200-249만원	(15)	6.7	20.0	26.7	0.0	13.3	33.3	0.0	0.0
	250-299만원	(7)	14.3	28.6	14.3	0.0	14.3	28.6	0.0	0.0
	300-399만원	(6)	33.3	0.0	16.7	0.0	0.0	50.0	0.0	0.0
	400만원 이상	(8)	0.0	0.0	50.0	0.0	0.0	50.0	0.0	0.0
	무응답	(2)	0.0	0.0	0.0	0.0	50.0	50.0	0.0	0.0

이러한 결과를 “고용형태”와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로 구분지어 살펴보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발견된다. “고용형태”와 관련해서 ‘계약직/기간제’와 ‘일용직/임시직’에 속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서는 고용계약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빈도수가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파견/용역/도급’과 ‘특수고용’의 경우 그 수치가 70% 전후로 나타나 고용조건이 이들의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고용조건과 관련된 투표 불가능 이유는 100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작업장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선거참여에 고용조건이 주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선거참여에의 제약이 높다는 사실은 선거참여에 있어서 고용조건의 개선이 시급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적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이를 준수하게끔 이끈다면 개선의 여지 역시 높음을 의미한다.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대조적으로 고용조건과 경제적 문제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선거참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것과는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선거기권 이유는 일반 유권자들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6>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서도 ‘정치적 무관심’이나 ‘선호후보 없음,’ 그리고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다수 나타났다. 다만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냉소적인 응답이 보다 두드러졌다는 사실은 이들의 정치적 불만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며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08년 총선을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결과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특수성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고용조건과 경제적 문제와 같은 직업적인 불안정성이 이들의 정치참여를 제약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를 통해 해소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2008년 총선의 경우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3년 이상이 시간이 흘렀고 설문조사의 결과가 응답자들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대한 정확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투영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본 설문조사에서는 가장 최근에 치러진 전국단위의 선거인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같은 항목들을 설문조사에 포함시켰으며 그 결과는 <표 4-7>~<표 4-12>에 나타나 있다.

먼저 지방선거 당시 응답자들의 근로상태에 관한 결과를 담고 있는 <표 4-7>의 내용을 보면, 응답자들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2008년 총선 때보다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총선 당시 80.7%였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비율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86%로 높아졌고 이와 같은 비율은 사회경제적 변수들 모두에게서 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의 경제적 상황은 2008년에 비해 더 악화되었음을 의미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선거참여의 어려움 역시 더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한다.[27]

<표 4-8>을 살펴보면 응답자 중 55.4%만이 투표에 참가했다고 답하여 18대 총선과 비교해서 약 7%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표율 하락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들의 선거참여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을 시사한다. 첫째, 이들의 투표율은 대개 80% 전후로 나타나는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의 결과들과 비추어 대단히 낮은 수치이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실제 투표율이 54.5%로 나타나 2008년 총선의 46.1%에 비해 오히려 상승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율이 18대 총선보다 하락하였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례적인 것이다.

27) 이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이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11.1%의 실업인구가 비정규직으로 편입되었고, 3%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7>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일 당시 귀하의 근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비정규직	정규직	실업
전 체		(840)	86.0	3.0	11.1
성별	남성	(551)	87.5	3.3	9.3
	여성	(289)	83.0	2.4	14.5
연령	20대	(76)	63.2	3.9	32.9
	30대	(130)	78.5	6.2	15.4
	40대	(230)	84.8	3.9	11.3
	50대	(272)	93.0	1.1	5.9
	60세 이상	(132)	93.9	1.5	4.5
최종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8)	100.0	0.0	0.0
	초등학교 중퇴	(8)	100.0	0.0	0.0
	초등학교 졸업	(52)	98.1	0.0	1.9
	중학교 중퇴//졸업, ~ 고등학교 중퇴	(132)	94.7	0.0	5.3
	고등학교 졸업	(332)	90.7	1.8	7.5
	직업학교	(7)	57.1	14.3	28.6
	대학 중퇴	(47)	85.1	0.0	14.9
	대학 졸업	(221)	70.6	7.7	21.7
	응답거절	(33)	87.9	3.0	9.1
거주지역	서울	(330)	82.4	4.8	12.7
	인천/경기	(234)	88.0	1.7	10.3
	강원	(8)	62.5	12.5	25.0
	대전/충북/충남	(53)	92.5	0.0	7.5
	광주/전북/전남	(73)	84.9	1.4	13.7
	대구/경북	(86)	95.3	0.0	4.7
	부산/울산/경남	(56)	82.1	5.4	12.5
고용형태	계약직/기간제	(311)	81.7	3.9	14.5
	일용직/임시직	(276)	92.0	0.4	7.6
	시간제 · 아르바이트	(27)	55.6	11.1	33.3
	파견/용역/도급	(131)	84.0	5.3	10.7
	특수고용	(95)	93.7	2.1	4.2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126)	63.5	9.5	27.0
	10-50명	(233)	89.7	1.7	8.6
	51-100명	(126)	88.1	1.6	10.3
	101-300명	(200)	91.0	2.5	6.5
	301명 이상	(139)	92.1	0.7	7.2
	무응답	(16)	75.0	6.3	18.8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54)	72.2	3.7	24.1
	90-119만원	(101)	83.2	1.0	15.8
	120-149만원	(158)	88.6	2.5	8.9
	150-199만원	(165)	90.3	1.8	7.9
	200-249만원	(147)	89.1	4.1	6.8
	250-299만원	(56)	85.7	3.6	10.7
	300-399만원	(74)	86.5	4.1	9.5
	400만원 이상	(73)	79.5	4.1	16.4
	무응답	(12)	75.0	8.3	16.7

<표 4-8>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여부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구 분		사례수 (명)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전 체		(722)	55.4	44.6
성별	남성	(482)	53.1	46.9
	여성	(240)	60.0	40.0
연령	20대	(48)	64.6	35.4
	30대	(102)	52.0	48.0
	40대	(195)	55.9	44.1
	50대	(253)	54.5	45.5
	60세 이상	(124)	55.6	44.4
최종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8)	25.0	75.0
	초등학교 중퇴	(8)	12.5	87.5
	초등학교 졸업	(51)	58.8	41.2
	중학교 중퇴//졸업, ~ 고등학교 중퇴	(125)	59.2	40.8
	고등학교 졸업	(301)	48.5	51.5
	직업학교	(4)	50.0	50.0
	대학 중퇴	(40)	57.5	42.5
	대학 졸업	(156)	67.9	32.1
	응답거절	(29)	55.2	44.8
거주지역	서울	(272)	55.1	44.9
	인천/경기	(206)	54.4	45.6
	강원	(5)	80.0	20.0
	대전/충북/충남	(49)	59.2	40.8
	광주/전북/전남	(62)	69.4	30.6
	대구/경북	(82)	52.4	47.6
	부산/울산/경남	(46)	41.3	58.7
고용형태	계약직/기간제	(254)	64.2	35.8
	일용직/임시직	(254)	50.4	49.6
	시간제 · 아르바이트	(15)	60.0	40.0
	파견/용역/도급	(110)	43.6	56.4
	특수고용	(89)	58.4	41.6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80)	48.8	51.3
	10-50명	(209)	57.9	42.1
	51-100명	(111)	63.1	36.9
	101-300명	(182)	46.2	53.8
	301명 이상	(128)	61.7	38.3
	무응답	(12)	58.3	41.7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39)	59.0	41.0
	90-119만원	(84)	58.3	41.7
	120-149만원	(140)	55.7	44.3
	150-199만원	(149)	40.3	59.7
	200-249만원	(131)	59.5	40.5
	250-299만원	(48)	62.5	37.5
	300-399만원	(64)	62.5	37.5
	400만원 이상	(58)	62.1	37.9
	무응답	(9)	66.7	33.3

<표 4-9> 투표참여방식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구 분		사례수 (명)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부재자 투표
전 체		(400)	99.0	1.0
성별	남성	(256)	99.2	0.8
	여성	(144)	98.6	1.4
연령	20대	(31)	90.3	9.7
	30대	(53)	100.0	0.0
	40대	(109)	100.0	0.0
	50대	(138)	99.3	0.7
	60세 이상	(69)	100.0	0.0
최종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2)	100.0	0.0
	초등학교 중퇴	(1)	100.0	0.0
	초등학교 졸업	(30)	100.0	0.0
	중학교 중퇴//졸업, ~ 고등학교 중퇴	(74)	100.0	0.0
	고등학교 졸업	(146)	99.3	0.7
	직업학교	(2)	100.0	0.0
	대학 중퇴	(23)	100.0	0.0
	대학 졸업	(106)	97.2	2.8
	응답거절	(16)	100.0	0.0
거주지역	서울	(150)	98.7	1.3
	인천/경기	(112)	100.0	0.0
	강원	(4)	100.0	0.0
	대전/충북/충남	(29)	96.6	3.4
	광주/전북/전남	(43)	97.7	2.3
	대구/경북	(43)	100.0	0.0
	부산/울산/경남	(19)	100.0	0.0
고용형태	계약직/기간제	(163)	99.4	0.6
	일용직/임시직	(128)	99.2	0.8
	시간제 · 아르바이트	(9)	100.0	0.0
	파견/용역/도급	(48)	97.9	2.1
	특수고용	(52)	98.1	1.9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39)	97.4	2.6
	10-50명	(121)	100.0	0.0
	51-100명	(70)	100.0	0.0
	101-300명	(84)	98.8	1.2
	301명 이상	(79)	98.7	1.3
	무응답	(7)	85.7	14.3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23)	100.0	0.0
	90-119만원	(49)	100.0	0.0
	120-149만원	(78)	97.4	2.6
	150-199만원	(60)	100.0	0.0
	200-249만원	(78)	98.7	1.3
	250-299만원	(30)	100.0	0.0
	300-399만원	(40)	100.0	0.0
	400만원 이상	(36)	97.2	2.8
	무응답	(6)	100.0	0.0

그렇다면 이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표 4-10>의 내용을 보면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응답과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은 각각 65.2, 34.8%로 나타나 2008년 총선의 경우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공통점은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선거에서 참여불가능과 자발적 기권의 전체적인 양상은 변화하지 않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참여불가능과 자발적 기권의 이유들은 2008년 총선의 경우와 비교해서 차이를 보이는가? 각각의 이유들은 <표 4-11>과 <표 4-12>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표 4-11>에 나타난 참여불가능 이유를 살펴보면 고용계약과 관련된 응답이 41.9%, 경제적 이유인 임금과 관련한 응답이 27.1%로 나타나 2008년의 경우와 유사한 빈도수를 보였다.[28] 개인적인 일로 참여가 불가능했던 경우는 14.3%로 나타나 2008년의 14.6%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선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고용관련 요인들의 투표참여에 영향이 차이가 없음을 알려준다. 이는 고용관련 투표저해요인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보다 적절한 해석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들이 여전히 고용조건과 경제적 상황이며 그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의 60% 가량이 고용조건과 경제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중 고용조건 요인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투표참여의 측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이 일반 유권자들의 그것과 괴리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 개연성을 의미한다.

---

28) 2008년 총선의 경우 두 이유의 빈도수는 각각 42.7, 26.8%로 나타났다(<표 4-5> 참조).

<표 4-10> 투표참여 불가능/기권 여부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구 분		사례수 (명)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전 체		(322)	65.2	34.8
성별	남성	(226)	66.8	33.2
	여성	(96)	61.5	38.5
연령	20대	(17)	41.2	58.8
	30대	(49)	55.1	44.9
	40대	(86)	64.0	36.0
	50대	(115)	69.6	30.4
	60세 이상	(55)	74.5	25.5
최종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6)	83.3	16.7
	초등학교 중퇴	(7)	57.1	42.9
	초등학교 졸업	(21)	81.0	19.0
	중학교 중퇴//졸업, ~ 고등학교 중퇴	(51)	72.5	27.5
	고등학교 졸업	(155)	68.4	31.6
	직업학교	(2)	50.0	50.0
	대학 중퇴	(17)	58.8	41.2
	대학 졸업	(50)	46.0	54.0
	응답거절	(13)	53.8	46.2
거주지역	서울	(122)	66.4	33.6
	인천/경기	(94)	71.3	28.7
	강원	(1)	100.0	0.0
	대전/충북/충남	(20)	60.0	40.0
	광주/전북/전남	(19)	63.2	36.8
	대구/경북	(39)	41.0	59.0
	부산/울산/경남	(27)	77.8	22.2
고용형태	계약직/기간제	(91)	48.4	51.6
	일용직/임시직	(126)	72.2	27.8
	시간제 · 아르바이트	(6)	50.0	50.0
	파견/용역/도급	(62)	71.0	29.0
	특수고용	(37)	75.7	24.3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41)	61.0	39.0
	10-50명	(88)	60.2	39.8
	51-100명	(41)	56.1	43.9
	101-300명	(98)	72.4	27.6
	301명 이상	(49)	69.4	30.6
	무응답	(5)	80.0	20.0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16)	75.0	25.0
	90-119만원	(35)	68.6	31.4
	120-149만원	(62)	69.4	30.6
	150-199만원	(89)	75.3	24.7
	200-249만원	(53)	58.5	41.5
	250-299만원	(18)	55.6	44.4
	300-399만원	(24)	54.2	45.8
	400만원 이상	(22)	40.9	59.1
	무응답	(3)	33.3	66.7

<표 4-11> 투표참여 불가능 이유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구 분		사례수 (명)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	임금이 (전액/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동료에게 미치는 피해 때문에	개인적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	기타
전 체		(210)	41.9	27.1	6.7	1.4	4.8	14.3	3.8
성별	남성	(151)	36.4	34.4	7.3	1.3	5.3	11.9	3.3
	여성	(59)	55.9	8.5	5.1	1.7	3.4	20.3	5.1
연령	20대	(7)	28.6	14.3	0.0	0.0	14.3	28.6	14.3
	30대	(27)	29.6	22.2	18.5	0.0	3.7	18.5	7.4
	40대	(55)	36.4	25.5	7.3	1.8	9.1	10.9	9.1
	50대	(80)	42.5	38.8	2.5	1.3	1.3	13.8	0.0
	60세 이상	(41)	58.5	12.2	7.3	2.4	4.9	14.6	0.0
최종 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5)	40.0	60.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중퇴	(4)	25.0	75.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졸업	(17)	35.3	41.2	0.0	0.0	11.8	11.8	0.0
	중학교 중퇴//졸업, ~ 고등학교 중퇴	(37)	45.9	24.3	0.0	2.7	5.4	21.6	0.0
	고등학교 졸업	(106)	44.3	24.5	12.3	0.9	1.9	13.2	2.8
	직업학교	(1)	0.0	100.0	0.0	0.0	0.0	0.0	0.0
	대학 중퇴	(10)	40.0	40.0	0.0	0.0	10.0	10.0	0.0
	대학 졸업	(23)	34.8	8.7	4.3	4.3	13.0	17.4	17.4
	응답거절	(7)	42.9	28.6	0.0	0.0	0.0	14.3	14.3
거주 지역	서울	(81)	59.3	7.4	7.4	2.5	6.2	14.8	2.5
	인천/경기	(67)	28.4	49.3	1.5	0.0	1.5	14.9	4.5
	강원	(1)	0.0	0.0	0.0	0.0	0.0	100.0	0.0
	대전/충북/충남	(12)	25.0	50.0	0.0	0.0	8.3	8.3	8.3
	광주/전북/전남	(12)	41.7	8.3	25.0	0.0	0.0	16.7	8.3
	대구/경북	(16)	25.0	25.0	12.5	0.0	18.8	12.5	6.3
	부산/울산/경남	(21)	42.9	33.3	9.5	4.8	0.0	9.5	0.0
고용 형태	계약직/기간제	(44)	36.4	13.6	6.8	0.0	11.4	22.7	9.1
	일용직/임시직	(91)	24.2	52.7	9.9	1.1	3.3	8.8	0.0
	시간제 · 아르바이트	(3)	0.0	33.3	0.0	33.3	0.0	33.3	0.0
	파견/용역/도급	(44)	65.9	4.5	2.3	2.3	4.5	18.2	2.3
	특수고용	(28)	75.0	0.0	3.6	0.0	0.0	10.7	10.7
직장 내 비정 규직 근로 자 수	10명 미만	(25)	40.0	12.0	20.0	4.0	4.0	12.0	8.0
	10-50명	(53)	22.6	50.9	9.4	0.0	3.8	7.5	5.7
	51-100명	(23)	26.1	34.8	4.3	4.3	4.3	26.1	0.0
	101-300명	(71)	59.2	22.5	1.4	0.0	4.2	12.7	0.0
	301명 이상	(34)	50.0	5.9	5.9	2.9	5.9	20.6	8.8
	무응답	(4)	25.0	25.0	0.0	0.0	25.0	25.0	0.0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12)	66.7	0.0	0.0	8.3	0.0	16.7	8.3
	90-119만원	(24)	45.8	8.3	16.7	0.0	8.3	20.8	0.0
	120-149만원	(43)	41.9	27.9	7.0	2.3	4.7	16.3	0.0
	150-199만원	(67)	40.3	34.3	6.0	0.0	3.0	11.9	4.5
	200-249만원	(31)	35.5	32.3	9.7	0.0	6.5	9.7	6.5
	250-299만원	(10)	60.0	10.0	0.0	10.0	0.0	10.0	10.0
	300-399만원	(13)	23.1	38.5	0.0	0.0	7.7	23.1	7.7
	400만원 이상	(9)	44.4	33.3	0.0	0.0	11.1	11.1	0.0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표 4-12> 투표기권 이유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구 분		사례수 (명)	직장 근무 때문에 피곤해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귀찮아서	기타
전 체		(112)	10.7	18.8	17.0	7.1	11.6	33.0	0.9	0.9
성별	남성	(75)	12.0	24.0	14.7	8.0	9.3	30.7	0.0	1.3
	여성	(37)	8.1	8.1	21.6	5.4	16.2	37.8	2.7	0.0
연령	20대	(10)	10.0	20.0	10.0	10.0	10.0	30.0	10.0	0.0
	30대	(22)	4.5	13.6	22.7	4.5	27.3	27.3	0.0	0.0
	40대	(31)	16.1	22.6	19.4	6.5	3.2	29.0	0.0	3.2
	50대	(35)	11.4	20.0	17.1	8.6	8.6	34.3	0.0	0.0
	60세 이상	(14)	7.1	14.3	7.1	7.1	14.3	50.0	0.0	0.0
최종 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1)	0.0	100.0	0.0	0.0	0.0	0.0	0.0	0.0
	초등학교 중퇴	(3)	33.3	33.3	0.0	0.0	0.0	33.3	0.0	0.0
	초등학교 졸업	(4)	0.0	0.0	25.0	0.0	50.0	25.0	0.0	0.0
	중학교 중퇴//졸업, ~ 고등학교 중퇴	(14)	0.0	28.6	0.0	7.1	0.0	64.3	0.0	0.0
	고등학교 졸업	(49)	16.3	16.3	16.3	10.2	10.2	28.6	0.0	2.0
	직업학교	(1)	0.0	0.0	0.0	100.0	0.0	0.0	0.0	0.0
	대학 중퇴	(7)	14.3	14.3	28.6	0.0	0.0	42.9	0.0	0.0
	대학 졸업	(27)	7.4	11.1	25.9	3.7	22.2	25.9	3.7	0.0
	응답거절	(6)	0.0	50.0	16.7	0.0	0.0	33.3	0.0	0.0
거주 지역	서울	(41)	4.9	12.2	24.4	9.8	14.6	31.7	2.4	0.0
	인천/경기	(27)	7.4	18.5	14.8	7.4	7.4	44.4	0.0	0.0
	강원	(0)	0.0	0.0	0.0	0.0	0.0	0.0	0.0	0.0
	대전/충북/충남	(8)	25.0	12.5	0.0	12.5	12.5	37.5	0.0	0.0
	광주/전북/전남	(7)	14.3	14.3	0.0	14.3	28.6	28.6	0.0	0.0
	대구/경북	(23)	8.7	30.4	21.7	0.0	8.7	26.1	0.0	4.3
	부산/울산/경남	(6)	50.0	33.3	0.0	0.0	0.0	16.7	0.0	0.0
고용 형태	계약직/기간제	(47)	2.1	14.9	23.4	2.1	17.0	36.2	2.1	2.1
	일용직/임시직	(35)	22.9	25.7	11.4	8.6	8.6	22.9	0.0	0.0
	시간제 · 아르바이트	(3)	0.0	0.0	0.0	33.3	0.0	66.7	0.0	0.0
	파견/용역/도급	(18)	5.6	22.2	16.7	16.7	5.6	33.3	0.0	0.0
	특수고용	(9)	22.2	11.1	11.1	0.0	11.1	44.4	0.0	0.0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16)	6.3	18.8	25.0	12.5	6.3	25.0	6.3	0.0
	10-50명	(35)	11.4	20.0	8.6	5.7	20.0	34.3	0.0	0.0
	51-100명	(18)	16.7	22.2	16.7	11.1	5.6	27.8	0.0	0.0
	101-300명	(27)	3.7	14.8	25.9	0.0	11.1	40.7	0.0	3.7
	301명 이상	(15)	20.0	20.0	13.3	13.3	6.7	26.7	0.0	0.0
	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0.0	0.0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4)	25.0	0.0	25.0	0.0	25.0	25.0	0.0	0.0
	90-119만원	(11)	9.1	9.1	9.1	9.1	27.3	36.4	0.0	0.0
	120-149만원	(19)	15.8	15.8	15.8	0.0	0.0	47.4	5.3	0.0
	150-199만원	(22)	13.6	13.6	4.5	13.6	9.1	40.9	0.0	4.5
	200-249만원	(22)	13.6	36.4	18.2	9.1	4.5	18.2	0.0	0.0
	250-299만원	(8)	12.5	25.0	25.0	0.0	0.0	37.5	0.0	0.0
	300-399만원	(11)	0.0	0.0	27.3	0.0	18.2	54.5	0.0	0.0
	400만원 이상	(13)	0.0	23.1	30.8	15.4	23.1	7.7	0.0	0.0
	무응답	(2)	0.0	50.0	0.0	0.0	50.0	0.0	0.0	0.0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발적 기권 이유를 보여주는 <표 4-12>의 내용은 어떠한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발적 기권의 주요 이유들은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이며 그 빈도수는 각각 18.8, 17, 33%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들은 앞에서 살펴본 투표불가능 이유와 유사하게 2008년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반 유권자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패턴과도 동일하다.

<표 4-11>과 <표 4-12>에 나타난 결과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발적 기권에 있어서는 일반 유권자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고용조건과 경제적 이유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고용조건이 투표참여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두드러지게 겪고 있는 하나의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결국 이렇듯 특수한 장애물이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인 대의민주주의의 구현을 저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발적 기권 이유들이 아직은 일반 유권자 설문조사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이들의 사회신뢰나 정치불신의 정도가 아직은 큰 사회불안정 요인으로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이 겪고 있는 특수한 투표참여의 저해요인들이 적절히 개선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훼손이 장기적으로 초래할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개선은 시급한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치적 관심도를 살펴보면, 이들 중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답변한 이들은 25%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이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도에도 정치참여의 출구가 막혀 있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4-13>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

구 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840)	4.5	13.9	21.4	60.1	18.5	81.5
성별	남성	(551)	4.9	11.8	20.5	62.8	16.7	83.3
	여성	(289)	3.8	18.0	23.2	55.0	21.8	78.2
연령	20대	(76)	0.0	18.4	18.4	63.2	18.4	81.6
	30대	(130)	3.8	13.1	26.2	56.9	16.9	83.1
	40대	(230)	3.5	13.5	24.3	58.7	17.0	83.0
	50대	(272)	3.7	13.2	21.3	61.8	16.9	83.1
	60세 이상	(132)	11.4	14.4	13.6	60.6	25.8	74.2
최종 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8)	12.5	0.0	62.5	25.0	12.5	87.5
	초등학교 중퇴	(8)	0.0	12.5	37.5	50.0	12.5	87.5
	초등학교 졸업	(52)	9.6	23.1	17.3	50.0	32.7	67.3
	중학교중퇴/졸업 ~고등학교중퇴	(132)	5.3	16.7	11.4	66.7	22.0	78.0
	고등학교 졸업	(332)	5.4	12.3	22.0	60.2	17.8	82.2
	직업학교	(7)	0.0	42.9	28.6	28.6	42.9	57.1
	대학 중퇴	(47)	4.3	12.8	25.5	57.4	17.0	83.0
	대학 졸업	(221)	1.4	12.7	26.2	59.7	14.0	86.0
	응답거절	(33)	6.1	12.1	9.1	72.7	18.2	81.8
거주 지역	서울	(330)	5.2	17.9	23.6	53.3	23.0	77.0
	인천/경기	(234)	3.8	14.5	22.2	59.4	18.4	81.6
	강원	(8)	0.0	0.0	0.0	100.0	0.0	100.0
	대전/충북/충남	(53)	1.9	11.3	7.5	79.2	13.2	86.8
	광주/전북/전남	(73)	4.1	5.5	17.8	72.6	9.6	90.4
	대구/경북	(86)	3.5	10.5	27.9	58.1	14.0	86.0
	부산/울산/경남	(56)	8.9	8.9	16.1	66.1	17.9	82.1
고용 형태	계약직, 기간제	(311)	5.1	15.4	23.5	55.9	20.6	79.4
	일용직, 임시직	(276)	4.0	12.7	21.0	62.3	16.7	83.3
	시간제 · 아르바이트	(27)	7.4	22.2	18.5	51.9	29.6	70.4
	파견, 용역, 도급	(131)	3.8	9.9	26.0	60.3	13.7	86.3
	특수고용	(95)	4.2	15.8	10.5	69.5	20.0	80.0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126)	7.1	7.9	20.6	64.3	15.1	84.9
	10-50명	(233)	4.7	12.4	20.2	62.7	17.2	82.8
	51-100명	(126)	5.6	19.8	19.0	55.6	25.4	74.6
	101-300명	(200)	2.0	18.0	27.0	53.0	20.0	80.0
	301명 이상	(139)	5.0	10.8	18.7	65.5	15.8	84.2
	무응답	(16)	0.0	12.5	18.8	68.8	12.5	87.5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54)	7.4	20.4	9.3	63.0	27.8	72.2
	90-119만원	(101)	8.9	12.9	13.9	64.4	21.8	78.2
	120-149만원	(158)	5.7	12.0	18.4	63.9	17.7	82.3
	150-199만원	(165)	3.0	14.5	20.6	61.8	17.6	82.4
	200-249만원	(147)	2.7	15.0	23.8	58.5	17.7	82.3
	250-299만원	(56)	3.6	3.6	26.8	66.1	7.1	92.9
	300-399만원	(74)	1.4	8.1	25.7	64.9	9.5	90.5
	400만원 이상	(73)	5.5	21.9	35.6	37.0	27.4	72.6
	무응답	(12)	0.0	33.3	25.0	41.7	33.3	66.7

<표4-14> 정치적 표현수단으로서의 투표의 가치

구 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종합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 체		(840)	39.0	32.9	18.8	9.3	71.9	28.1
성별	남성	(551)	41.6	30.9	18.7	8.9	72.4	27.6
	여성	(289)	34.3	36.7	19.0	10.0	70.9	29.1
연령	20대	(76)	19.7	46.1	27.6	6.6	65.8	34.2
	30대	(130)	28.5	40.8	21.5	9.2	69.2	30.8
	40대	(230)	36.5	28.3	24.8	10.4	64.8	35.2
	50대	(272)	41.9	34.2	13.6	10.3	76.1	23.9
	60세 이상	(132)	59.1	22.7	11.4	6.8	81.8	18.2
최종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8)	25.0	12.5	62.5	0.0	37.5	62.5
	초등학교 중퇴	(8)	50.0	50.0	0.0	0.0	100.0	0.0
	초등학교 졸업	(52)	44.2	36.5	9.6	9.6	80.8	19.2
	중학교 중퇴/졸업 ~고등학교 중퇴	(132)	48.5	33.3	12.1	6.1	81.8	18.2
	고등학교 졸업	(332)	41.0	28.9	19.6	10.5	69.9	30.1
	직업학교	(7)	28.6	57.1	14.3	0.0	85.7	14.3
	대학 중퇴	(47)	42.6	31.9	17.0	8.5	74.5	25.5
	대학 졸업	(221)	27.6	39.8	23.1	9.5	67.4	32.6
	응답거절	(33)	48.5	15.2	21.2	15.2	63.6	36.4
거주지역	서울	(330)	43.0	31.8	17.6	7.6	74.8	25.2
	인천/경기	(234)	31.6	31.6	21.8	15.0	63.2	36.8
	강원	(8)	37.5	25.0	37.5	0.0	62.5	37.5
	대전/충북/충남	(53)	39.6	47.2	7.5	5.7	86.8	13.2
	광주/전북/전남	(73)	46.6	28.8	19.2	5.5	75.3	24.7
	대구/경북	(86)	36.0	33.7	25.6	4.7	69.8	30.2
	부산/울산/경남	(56)	41.1	35.7	10.7	12.5	76.8	23.2
고용형태	계약직, 기간제	(311)	34.4	38.3	19.6	7.7	72.7	27.3
	일용직, 임시직	(276)	39.5	34.8	14.9	10.9	74.3	25.7
	시간제 · 아르바이트	(27)	14.8	44.4	25.9	14.8	59.3	40.7
	파견, 용역, 도급	(131)	41.2	22.9	26.0	9.9	64.1	35.9
	특수고용	(95)	56.8	20.0	15.8	7.4	76.8	23.2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126)	31.7	37.3	17.5	13.5	69.0	31.0
	10-50명	(233)	36.9	39.5	12.9	10.7	76.4	23.6
	51-100명	(126)	46.8	27.0	21.4	4.8	73.8	26.2
	101-300명	(200)	38.0	28.5	25.5	8.0	66.5	33.5
	301명 이상	(139)	43.9	30.9	15.1	10.1	74.8	25.2
	무응답	(16)	37.5	18.8	43.8	0.0	56.3	43.8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54)	37.0	35.2	16.7	11.1	72.2	27.8
	90-119만원	(101)	46.5	29.7	16.8	6.9	76.2	23.8
	120-149만원	(158)	51.9	24.1	13.3	10.8	75.9	24.1
	150-199만원	(165)	35.2	33.9	20.0	10.9	69.1	30.9
	200-249만원	(147)	38.8	32.0	21.8	7.5	70.7	29.3
	250-299만원	(56)	41.1	32.1	17.9	8.9	73.2	26.8
	300-399만원	(74)	32.4	44.6	17.6	5.4	77.0	23.0
	400만원 이상	(73)	17.8	41.1	27.4	13.7	58.9	41.1
	무응답	(12)	33.3	41.7	25.0	0.0	75.0	25.0

<표 4-13>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 행위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내용이다.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 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81.5%에 달했다. 투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하였다. 주목할 점은 60%를 훨씬 넘는 응답자가 ‘자신의 투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하게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유권자 중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상당수는 제반 제약요건이 개선되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점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투표가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연령, 최종학력, 거주 지역, 고용형태,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수, 가구 한 달 수입 등으로 나눠보아도 고르게 나타났다. 유권자의 성별 분류에서는 남성 유권자의 83.3%, 여성 유권자의 78.2%가 ‘자신의 투표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의 80% 이상의 응답자가 자신의 투표행위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 보았을 때는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응답자 90.4%, 대구/경북 86%, 부산/울산/경남 82.1%가 ‘투표는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서울 (77%), 인천/경기 (81.6%) 등 수도권 응답자에 비해 투표에 대한 열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태도가 그나마 다양하게 나타난 곳은 응답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 항목이었다. 일용직·임시직 (83.3%), 파견·용역·도급 (86.3%), 특수고용 (80%), 계약직·기간제 (79.4%)에 비해 시간제·아르바이트 직군에 종사하는 응답자 중 투표의 중요성을 피력한 비중은 70.4%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시간제·아르바이트 직군에 종사하는 응답자 군은 다른 고용 군에 비해 투표에 관심이 덜한 것인가? 이는 응답자 전체 (840명) 중 시간제·아르바이트 직군의 비중이 27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시간제·아르바이트 직군의 응답자 설문조사는 다른 직군에 비하여 훨씬 어려운 점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보다 확대된 조사를 통해서 응답자의 수가 늘어날 경우 결과가 다른 직군과 큰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표 4-14>는 <표 4-13>의 연장선에서 응답자가 투표에 부여하는 가치의 정도를 다르게 측정한 것이다. 응답자들은 “나에게 있어 투표만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동의정도를 표시하도록 요구받았다. 투표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응답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71.9%에 달한다. 이는 매우 그렇다 (39%), 대체로 그렇다 (32.9%)로 응답한 유권자를 포괄한 것이다. 반면 투표 이외의 다른 정치적 의사표현의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8.1%였다. 해당 설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응답자 군의 연령과 최종학력 측면에서 특색있는 구분이 나타난다. 먼저 응답자의 연령에 있어 20~40대의 경우 투표 이외의 다른 정치적 의사표시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각 군별 30%를 상회한 반면 (34.2%, 30.8%, 35.2%), 이 비중이 50~60대 응답자에선 23.9%와 18.2%로 상당히 감소한다. 최종학력을 놓고 보면 초등학교 졸업, 고교중퇴 이하, 고등학교 졸업 등의 군에서는 투표에 대한 의존 비율이 높은 반면 (80.8%, 81.8%, 69.9%), 대학졸업 이상의 응답자 군의 투표 의존 비율은 67.4%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4-15> 응답자 직장의 선거일 유급 휴가·휴무의 보장여부

구 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전 체		(840)	22.7	77.3
성별	남성	(551)	17.2	82.8
	여성	(289)	33.2	66.8
연령	20대	(76)	52.6	47.4
	30대	(130)	32.3	67.7
	40대	(230)	17.8	82.2
	50대	(272)	12.9	87.1
	60세 이상	(132)	25.0	75.0
최종 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8)	12.5	87.5
	초등학교 중퇴	(8)	0.0	100.0
	초등학교 졸업	(52)	26.9	73.1
	중학교 중퇴/졸업 ~고등학교 중퇴	(132)	18.2	81.8
	고등학교 졸업	(332)	16.6	83.4
	직업학교	(7)	42.9	57.1
	대학 중퇴	(47)	12.8	87.2
	대학 졸업	(221)	37.1	62.9
	응답거절	(33)	18.2	81.8
거주 지역	서울	(330)	28.2	71.8
	인천/경기	(234)	23.1	76.9
	강원	(8)	37.5	62.5
	대전/충북/충남	(53)	15.1	84.9
	광주/전북/전남	(73)	26.0	74.0
	대구/경북	(86)	8.1	91.9
	부산/울산/경남	(56)	12.5	87.5
고용 형태	계약직, 기간제	(311)	40.5	59.5
	일용직, 임시직	(276)	7.6	92.4
	시간제 · 아르바이트	(27)	29.6	70.4
	파견, 용역, 도급	(131)	21.4	78.6
	특수고용	(95)	8.4	91.6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126)	22.2	77.8
	10-50명	(233)	19.7	80.3
	51-100명	(126)	28.6	71.4
	101-300명	(200)	22.5	77.5
	301명 이상	(139)	25.2	74.8
	무응답	(16)	6.3	93.8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54)	25.9	74.1
	90-119만원	(101)	29.7	70.3
	120-149만원	(158)	20.3	79.7
	150-199만원	(165)	10.3	89.7
	200-249만원	(147)	19.7	80.3
	250-299만원	(56)	25.0	75.0
	300-399만원	(74)	17.6	82.4
	400만원 이상	(73)	49.3	50.7
	무응답	(12)	50.0	50.0

<표 4-16>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투표일 휴무 법적보장에 대한 응답자 인지여부

구 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하다
전 체		(840)	36.3	63.7
성별	남성	(551)	37.6	62.4
	여성	(289)	33.9	66.1
연령	20대	(76)	27.6	72.4
	30대	(130)	31.5	68.5
	40대	(230)	40.9	59.1
	50대	(272)	34.9	65.1
	60세 이상	(132)	40.9	59.1
최종 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8)	25.0	75.0
	초등학교 중퇴	(8)	50.0	50.0
	초등학교 졸업	(52)	42.3	57.7
	중학교 중퇴/졸업 ~고등학교 중퇴	(132)	34.8	65.2
	고등학교 졸업	(332)	36.1	63.9
	직업학교	(7)	57.1	42.9
	대학 중퇴	(47)	29.8	70.2
	대학 졸업	(221)	35.3	64.7
	응답거절	(33)	45.5	54.5
거주 지역	서울	(330)	35.2	64.8
	인천/경기	(234)	40.6	59.4
	강원	(8)	37.5	62.5
	대전/충북/충남	(53)	30.2	69.8
	광주/전북/전남	(73)	43.8	56.2
	대구/경북	(86)	31.4	68.6
	부산/울산/경남	(56)	28.6	71.4
고용 형태	계약직, 기간제	(311)	41.2	58.8
	일용직, 임시직	(276)	30.1	69.9
	시간제 · 아르바이트	(27)	22.2	77.8
	파견, 용역, 도급	(131)	39.7	60.3
	특수고용	(95)	37.9	62.1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126)	34.9	65.1
	10-50명	(233)	35.2	64.8
	51-100명	(126)	34.9	65.1
	101-300명	(200)	32.5	67.5
	301명 이상	(139)	45.3	54.7
	무응답	(16)	43.8	56.3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54)	42.6	57.4
	90-119만원	(101)	43.6	56.4
	120-149만원	(158)	40.5	59.5
	150-199만원	(165)	29.7	70.3
	200-249만원	(147)	32.7	67.3
	250-299만원	(56)	41.1	58.9
	300-399만원	(74)	36.5	63.5
	400만원 이상	(73)	31.5	68.5
	무응답	(12)	33.3	66.7

<표 4-17>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시간 보장에 대한 응답자 인지여부

구 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하다
전 체		(840)	36.0	64.0
성별	남성	(551)	36.5	63.5
	여성	(289)	34.9	65.1
연령	20대	(76)	32.9	67.1
	30대	(130)	30.8	69.2
	40대	(230)	37.8	62.2
	50대	(272)	33.1	66.9
	60세 이상	(132)	45.5	54.5
최종 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8)	25.0	75.0
	초등학교 중퇴	(8)	62.5	37.5
	초등학교 졸업	(52)	38.5	61.5
	중학교 중퇴/졸업 ~고등학교 중퇴	(132)	34.8	65.2
	고등학교 졸업	(332)	35.8	64.2
	직업학교	(7)	71.4	28.6
	대학 중퇴	(47)	31.9	68.1
	대학 졸업	(221)	34.8	65.2
	응답거절	(33)	39.4	60.6
거주 지역	서울	(330)	36.1	63.9
	인천/경기	(234)	38.9	61.1
	강원	(8)	62.5	37.5
	대전/충북/충남	(53)	26.4	73.6
	광주/전북/전남	(73)	41.1	58.9
	대구/경북	(86)	33.7	66.3
	부산/울산/경남	(56)	25.0	75.0
고용 형태	계약직, 기간제	(311)	40.8	59.2
	일용직, 임시직	(276)	28.3	71.7
	시간제 · 아르바이트	(27)	25.9	74.1
	파견, 용역, 도급	(131)	41.2	58.8
	특수고용	(95)	37.9	62.1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126)	34.1	65.9
	10-50명	(233)	35.6	64.4
	51-100명	(126)	37.3	62.7
	101-300명	(200)	31.5	68.5
	301명 이상	(139)	43.2	56.8
	무응답	(16)	37.5	62.5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54)	37.0	63.0
	90-119만원	(101)	40.6	59.4
	120-149만원	(158)	38.0	62.0
	150-199만원	(165)	26.7	73.3
	200-249만원	(147)	37.4	62.6
	250-299만원	(56)	39.3	60.7
	300-399만원	(74)	39.2	60.8
	400만원 이상	(73)	34.2	65.8
	무응답	(12)	50.0	50.0

<표 4-18> 현재의 법조항이 투표참여 보장에 도움이 되는가?

구 분		사례수 (명)	큰 도움이 된다	조금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종합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 체		(840)	28.0	19.3	32.7	20.0	47.3	52.7
성별	남성	(551)	28.9	18.1	30.7	22.3	47.0	53.0
	여성	(289)	26.3	21.5	36.7	15.6	47.8	52.2
연령	20대	(76)	31.6	17.1	43.4	7.9	48.7	51.3
	30대	(130)	19.2	23.1	38.5	19.2	42.3	57.7
	40대	(230)	25.7	21.3	30.9	22.2	47.0	53.0
	50대	(272)	26.8	16.5	33.5	23.2	43.4	56.6
	60세 이상	(132)	40.9	18.9	22.7	17.4	59.8	40.2
최종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8)	25.0	12.5	25.0	37.5	37.5	62.5
	초등학교 중퇴	(8)	37.5	25.0	25.0	12.5	62.5	37.5
	초등학교 졸업	(52)	34.6	19.2	30.8	15.4	53.8	46.2
	중학교중퇴졸업 ~고등학교중퇴	(132)	28.0	18.2	34.1	19.7	46.2	53.8
	고등학교 졸업	(332)	29.8	16.3	31.0	22.9	46.1	53.9
	직업학교	(7)	0.0	14.3	57.1	28.6	14.3	85.7
	대학 중퇴	(47)	27.7	17.0	31.9	23.4	44.7	55.3
	대학 졸업	(221)	23.5	24.9	37.1	14.5	48.4	51.6
	응답거절	(33)	33.3	21.2	18.2	27.3	54.5	45.5
거주지역	서울	(330)	30.6	22.1	29.1	18.2	52.7	47.3
	인천/경기	(234)	23.1	19.2	34.2	23.5	42.3	57.7
	강원	(8)	50.0	25.0	25.0	0.0	75.0	25.0
	대전/충북/충남	(53)	18.9	22.6	41.5	17.0	41.5	58.5
	광주/전북/전남	(73)	37.0	12.3	39.7	11.0	49.3	50.7
	대구/경북	(86)	27.9	16.3	30.2	25.6	44.2	55.8
	부산/울산/경남	(56)	26.8	12.5	35.7	25.0	39.3	60.7
고용형태	계약직, 기간제	(311)	29.6	22.8	31.8	15.8	52.4	47.6
	일용직, 임시직	(276)	25.7	17.0	31.9	25.4	42.8	57.2
	시간제 · 아르바이트	(27)	22.2	25.9	40.7	11.1	48.1	51.9
	파견, 용역, 도급	(131)	17.6	18.3	40.5	23.7	35.9	64.1
	특수고용	(95)	45.3	13.7	25.3	15.8	58.9	41.1
직장내 비정규직 근로자수	10명 미만	(126)	23.8	27.8	34.1	14.3	51.6	48.4
	10-50명	(233)	31.3	19.7	27.9	21.0	51.1	48.9
	51-100명	(126)	22.2	23.8	34.9	19.0	46.0	54.0
	101-300명	(200)	28.0	13.5	34.0	24.5	41.5	58.5
	301명 이상	(139)	31.7	13.7	36.0	18.7	45.3	54.7
	무응답	(16)	25.0	31.3	31.3	12.5	56.3	43.8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54)	25.9	22.2	33.3	18.5	48.1	51.9
	90-119만원	(101)	34.7	19.8	25.7	19.8	54.5	45.5
	120-149만원	(158)	27.2	20.9	26.6	25.3	48.1	51.9
	150-199만원	(165)	26.7	14.5	40.0	18.8	41.2	58.8
	200-249만원	(147)	20.4	15.0	41.5	23.1	35.4	64.6
	250-299만원	(56)	30.4	23.2	25.0	21.4	53.6	46.4
	300-399만원	(74)	33.8	27.0	27.0	12.2	60.8	39.2
	400만원 이상	(73)	31.5	20.5	35.6	12.3	52.1	47.9
	무응답	(12)	33.3	25.0	16.7	25.0	58.3	41.7

<표 4-19> 현재의 법 규정이 비정규직 투표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구 분		사례수 (명)	근로자가 법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법 내용은 잘 알고 있더라도 고용주에게 이를 요구하기 힘들어서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더라도 고용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전 체		(443)	15.6	41.1	43.3
성별	남성	(292)	15.1	39.7	45.2
	여성	(151)	16.6	43.7	39.7
연령	20대	(39)	17.9	48.7	33.3
	30대	(75)	12.0	50.7	37.3
	40대	(122)	12.3	43.4	44.3
	50대	(154)	16.2	35.7	48.1
	60세 이상	(53)	24.5	32.1	43.4
최종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5)	20.0	0.0	80.0
	초등학교 중퇴	(3)	0.0	0.0	100.0
	초등학교 졸업	(24)	45.8	20.8	33.3
	중학교중퇴졸업 ~고등학교중퇴	(71)	19.7	31.0	49.3
	고등학교 졸업	(179)	13.4	42.5	44.1
	직업학교	(6)	0.0	66.7	33.3
	대학 중퇴	(26)	26.9	42.3	30.8
	대학 졸업	(114)	10.5	50.0	39.5
	응답거절	(15)	0.0	46.7	53.3
거주지역	서울	(156)	18.6	43.6	37.8
	인천/경기	(135)	11.1	40.0	48.9
	강원	(2)	0.0	50.0	50.0
	대전/충북/충남	(31)	12.9	35.5	51.6
	광주/전북/전남	(37)	18.9	27.0	54.1
	대구/경북	(48)	16.7	54.2	29.2
	부산/울산/경남	(34)	17.6	35.3	47.1
고용형태	계약직, 기간제	(148)	17.6	45.9	36.5
	일용직, 임시직	(158)	14.6	33.5	51.9
	시간제 · 아르바이트	(14)	14.3	21.4	64.3
	파견, 용역, 도급	(84)	15.5	50.0	34.5
	특수고용	(39)	12.8	41.0	46.2
직장내 비정규직 근로자수	10명 미만	(61)	13.1	44.3	42.6
	10-50명	(114)	14.0	39.5	46.5
	51-100명	(68)	19.1	47.1	33.8
	101-300명	(117)	16.2	37.6	46.2
	301명 이상	(76)	17.1	39.5	43.4
	무응답	(7)	0.0	57.1	42.9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28)	32.1	32.1	35.7
	90-119만원	(46)	17.4	26.1	56.5
	120-149만원	(82)	15.9	35.4	48.8
	150-199만원	(97)	12.4	45.4	42.3
	200-249만원	(95)	11.6	47.4	41.1
	250-299만원	(26)	7.7	42.3	50.0
	300-399만원	(29)	27.6	37.9	34.5
	400만원 이상	(35)	14.3	54.3	31.4
	무응답	(5)	20.0	40.0	40.0

<표 4-15>는 응답자의 직장이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노동자는 22.7%에 불과하였고, 77.3%의 노동자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로시간을 쪼개는 등 유무형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응답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분석해 보면 일용직·임시직 군의 경우 전체의 7.6%만이 유급 휴무·휴업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유급 휴무·휴업을 보장받는 경우는 8.4%에 불과하였다. 시간제·아르바이트 종사자(29.4%), 파견·용역·도급 관계의 노동자 (21.4%) 또한 유급 휴무·휴업을 인정받는 경우가 1/4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 가장 사정이 나은 계약직·기간제 경우도 절반 이하의 노동자 (40.5%)만이 투표일에 유급휴무를 보장받고 있었다. 일용직·임시직, 시간제 등의 경우 어느 정도 투표일 휴무를 보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파견·용역·도급직 종사자나 심지어 계약직·기간제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투표일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조사결과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직종의 이익과 목소리가 정치권을 통해서 대표되는 데에 구조적인 제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4-16>과 <표 4-17>은 근로자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위한 법적 보장 조항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여부를 조사하였다. 먼저 <표4-16>은 「공직선거법」제6조 제3항의 내용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여부를 조사하였다. 「공직선거법」제6조 제3항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총 840명 중 해당 조항을 조사 전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6.3%였고, 절반이 넘는 63.7%의 노동자가 해당 조항을 모른다고 답하였다. 투표일 유급휴무의 법적보장을 다룬 해당조항에 대한 사전인식은 성별, 거주지역,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가구 한달수입 등의 분류항목에서는 변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연령에 있어 20대가 해당 조항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었으며(72.4%), 응답자의 학력에 따른 해당 법 조항의 인식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4-17>은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의 다른 한 축인 「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자의 선거권 행사시간 보장에 대해서 응답자가 알고 있는지를 묻고 조사하였다. '알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36%, '알고 있지 못하다'고 답한 비율이 64%로 <표 4-16>의 「공직선거법」 제6조 3항에 대한 인지 비율 (36.3%, 63.7%)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 학력, 거주지역,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가구 한달 수입에 따른 응답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응답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의 인지 정도가 차이를 보였다. 해당 법조항을 조사 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계약직·기간제 (59.2%), 파견·용역·도급 (58.8%)에 비하여, 일용직·임시직 (71.7%), 시간제·아르바이트 (74.1%) 종사자 군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등 현재의 법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참여 보장 조항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표 4-18>은 이와 관련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현재의 법 조항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28%에 불과하였다. 조금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도 19.3%로, 이를 종합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47.3%). 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32.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부정을 피력한 응답자도 20%나 되어 전체 응답자의 52.7%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 '근로자의 투표보장' 법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응답자의 일용직·임시직에 종사하는 경우 (57.2%), 파견·용역·도급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경우 (64.1%)에 높았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응답자에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10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 보다는 비정규직 규모가 100명 이상인 중·대형 사업장에서 '현재의 법조항이 근로자의 투표보장에 도움이 안된다'는 부정적 반응이 많았다는 것이다.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 또는 10-50명인 응답자 군에서는 '도움이 안된다'는 반응이 각각 48.4%, 48.9%인 반면, 101-300명, 301명 이상 군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58.5%, 54.7%로 높았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소규모 사업장보다 비정규직 수가 많은 중·대형 사업장의 근로자가 '현재의 법조항'에 대해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가? 좀 더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제시 가능한 가설로는 소형 사업장 근로자의 투표에 대한 낮은 기대와 중·대형 사업장에 근무함에도 투표 참여를 위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데 따른 (상대적) 불만이 표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직장 내 비정규직의 규모와 관계없이 현재의 「근로기준법」,「공직선거법」조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왜 응답자들은 현재의 법 규정이 비정규직의 투표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표 4-18>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 「공직선거법」조항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묻고, <표 4-19>에 정리하였다. 단순히 '근로자가 법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 규정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5.6%에 불과하였다. 반면 근로자가 법 내용은 잘 알고 있더라도 고용주에 이를 요구하기 힘들다 (41.1%)거나,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더라도 고용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는다(43.3%)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법은 규정되어 있으되, 그 실질적 집행은 근로자-고용주 간의 관계에서 청구하고 허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권을 요구할 수 없거나, 고용주가 거절해도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 현재의 법 규정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

표권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법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엄격한 모니터링과 집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서 무엇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표 4-20>, <표 4-21>, <표 4-22>, <표 4-23>, <표 4-24>는 이와 관련한 유권자의 생각을 조사 정리한 것이다. 조사자의 절반이 넘는 54.2%가 투표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관련 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고용자의 인식을 전환한다거나 (19.8%), 근로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거나 (9%), 현행 법 규정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17%)는 훨씬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 학력, 거주지역, 고용형태, 비정규직 근로자수, 가구 수입 등의 분류를 통해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입장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투표에 관한 일시·장소·방법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최근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먼저 유권자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투표소 어느 곳이든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에 응답자의 85.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56.3%에 이르렀다.

현행 선거제도상의 투표시간이 경직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투표개시시간을 앞당기거나 투표마감시간을 뒤로 미루는 방법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7.7%,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응답한 사람이 32.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투표시간을 전·후로 연장하였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3.6%였다.

투표일 뿐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부재자 신고 없이 유권자가 먼저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대안에 대한 응답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75%의 응답자가 '도움이 될 것이다'로 생각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7.9%에 그쳤다.

위 세 가지 대안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등록지 구·시·군내 설치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 하는 방안이 전체의 58.1%의 지지를 얻어, 선거일 투표시간 연장 (12.4%)이나 선거일 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방안 (22.9%)을 훨씬 앞섰다. 이는 '시간이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다는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면에선 유권자의 주민등록에 의거 투표소를 일괄 할당함으로서 발생하는 불편이 상당함을 보여주며, 관련 개선책의 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낸다.

<표 4-20>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

구 분		사례수 (명)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 강화	비정규직 투표참여에 대한 고용자의 인식전환	투표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근로자의 노력	투표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관련 법 개정
전 체		(840)	17.0	19.8	9.0	54.2
성별	남성	(551)	14.9	20.3	8.9	55.9
	여성	(289)	21.1	18.7	9.3	50.9
연령	20대	(76)	23.7	18.4	9.2	48.7
	30대	(130)	18.5	16.9	9.2	55.4
	40대	(230)	16.1	18.7	8.3	57.0
	50대	(272)	12.9	23.5	8.5	55.1
	60세 이상	(132)	22.0	17.4	11.4	49.2
최종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8)	50.0	25.0	0.0	25.0
	초등학교 중퇴	(8)	12.5	37.5	0.0	50.0
	초등학교 졸업	(52)	15.4	17.3	19.2	48.1
	중학교 중퇴/졸업 ~고등학교 중퇴	(132)	14.4	18.2	13.6	53.8
	고등학교 졸업	(332)	15.4	20.8	6.0	57.8
	직업학교	(7)	0.0	14.3	14.3	71.4
	대학 중퇴	(47)	25.5	21.3	6.4	46.8
	대학 졸업	(221)	19.9	18.1	9.0	52.9
	응답거절	(33)	12.1	24.2	12.1	51.5
거주지역	서울	(330)	18.5	21.5	9.7	50.3
	인천/경기	(234)	15.4	19.7	9.4	55.6
	강원	(8)	25.0	12.5	12.5	50.0
	대전/충북/충남	(53)	18.9	15.1	7.5	58.5
	광주/전북/전남	(73)	17.8	12.3	6.8	63.0
	대구/경북	(86)	15.1	18.6	11.6	54.7
	부산/울산/경남	(56)	14.3	26.8	3.6	55.4
고용형태	계약직, 기간제	(311)	19.6	21.9	13.5	45.0
	일용직, 임시직	(276)	15.9	21.7	6.2	56.2
	시간제 · 아르바이트	(27)	18.5	11.1	3.7	66.7
	파견, 용역, 도급	(131)	19.8	16.0	7.6	56.5
	특수고용	(95)	7.4	14.7	6.3	71.6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126)	11.9	20.6	7.9	59.5
	10-50명	(233)	18.5	21.5	8.6	51.5
	51-100명	(126)	24.6	19.0	14.3	42.1
	101-300명	(200)	15.0	21.5	6.0	57.5
	301명 이상	(139)	14.4	16.5	9.4	59.7
	무응답	(16)	25.0	0.0	18.8	56.3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54)	9.3	18.5	9.3	63.0
	90-119만원	(101)	21.8	16.8	8.9	52.5
	120-149만원	(158)	12.7	22.2	3.8	61.4
	150-199만원	(165)	13.9	15.2	10.3	60.6
	200-249만원	(147)	16.3	25.9	6.1	51.7
	250-299만원	(56)	16.1	21.4	14.3	48.2
	300-399만원	(74)	20.3	17.6	14.9	47.3
	400만원 이상	(73)	27.4	17.8	12.3	42.5
	무응답	(12)	41.7	25.0	16.7	16.7

<표 4-21> 정책대안 1: 주민등록지 구·시·군내 설치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

구 분		사례수 (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합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 체		(840)	56.3	29.4	10.2	4.0	85.7	14.3
성별	남성	(551)	57.5	27.2	10.5	4.7	84.8	15.2
	여성	(289)	54.0	33.6	9.7	2.8	87.5	12.5
연령	20대	(76)	47.4	36.8	10.5	5.3	84.2	15.8
	30대	(130)	45.4	32.3	16.2	6.2	77.7	22.3
	40대	(230)	56.1	32.2	8.7	3.0	88.3	11.7
	50대	(272)	59.6	27.2	9.9	3.3	86.8	13.2
	60세 이상	(132)	65.9	22.0	7.6	4.5	87.9	12.1
최종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8)	50.0	25.0	0.0	25.0	75.0	25.0
	초등학교 중퇴	(8)	37.5	37.5	0.0	25.0	75.0	25.0
	초등학교 졸업	(52)	59.6	23.1	13.5	3.8	82.7	17.3
	중학교 중퇴/졸업 ~고등학교 중퇴	(132)	61.4	27.3	9.1	2.3	88.6	11.4
	고등학교 졸업	(332)	59.0	26.5	11.1	3.3	85.5	14.5
	직업학교	(7)	28.6	71.4	0.0	0.0	100.0	0.0
	대학 중퇴	(47)	48.9	25.5	12.8	12.8	74.5	25.5
	대학 졸업	(221)	52.0	35.3	10.0	2.7	87.3	12.7
	응답거절	(33)	54.5	33.3	6.1	6.1	87.9	12.1
거주지역	서울	(330)	59.4	27.9	9.7	3.0	87.3	12.7
	인천/경기	(234)	52.6	31.6	10.3	5.6	84.2	15.8
	강원	(8)	62.5	12.5	0.0	25.0	75.0	25.0
	대전/충북/충남	(53)	54.7	34.0	9.4	1.9	88.7	11.3
	광주/전북/전남	(73)	57.5	34.2	6.8	1.4	91.8	8.2
	대구/경북	(86)	54.7	23.3	16.3	5.8	77.9	22.1
	부산/울산/경남	(56)	55.4	30.4	10.7	3.6	85.7	14.3
고용형태	계약직, 기간제	(311)	55.9	31.8	9.3	2.9	87.8	12.2
	일용직, 임시직	(276)	56.2	28.3	9.4	6.2	84.4	15.6
	시간제 · 아르바이트	(27)	40.7	29.6	22.2	7.4	70.4	29.6
	파견, 용역, 도급	(131)	52.7	30.5	13.0	3.8	83.2	16.8
	특수고용	(95)	67.4	23.2	8.4	1.1	90.5	9.5
직장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126)	51.6	29.4	13.5	5.6	81.0	19.0
	10-50명	(233)	59.2	24.5	10.7	5.6	83.7	16.3
	51-100명	(126)	45.2	41.3	10.3	3.2	86.5	13.5
	101-300명	(200)	60.5	28.0	8.0	3.5	88.5	11.5
	301명 이상	(139)	61.9	28.1	9.4	0.7	89.9	10.1
	무응답	(16)	37.5	37.5	12.5	12.5	75.0	25.0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54)	51.9	25.9	13.0	9.3	77.8	22.2
	90-119만원	(101)	59.4	27.7	10.9	2.0	87.1	12.9
	120-149만원	(158)	55.7	29.7	11.4	3.2	85.4	14.6
	150-199만원	(165)	60.6	25.5	7.9	6.1	86.1	13.9
	200-249만원	(147)	48.3	38.1	11.6	2.0	86.4	13.6
	250-299만원	(56)	57.1	28.6	7.1	7.1	85.7	14.3
	300-399만원	(74)	63.5	23.0	9.5	4.1	86.5	13.5
	400만원 이상	(73)	56.2	30.1	11.0	2.7	86.3	13.7
	무응답	(12)	50.0	41.7	8.3	0.0	91.7	8.3

<표 4-22> 정책대안 2: 선거일 투표시간 연장

구 분		사례수 (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합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 체		(840)	33.6	34.2	25.7	6.5	67.7	32.3
성별	남성	(551)	35.6	32.7	26.0	5.8	68.2	31.8
	여성	(289)	29.8	37.0	25.3	8.0	66.8	33.2
연령	20대	(76)	30.3	40.8	22.4	6.6	71.1	28.9
	30대	(130)	30.0	38.5	24.6	6.9	68.5	31.5
	40대	(230)	37.4	30.4	28.7	3.5	67.8	32.2
	50대	(272)	33.1	33.5	25.4	8.1	66.5	33.5
	60세 이상	(132)	33.3	34.1	24.2	8.3	67.4	32.6
최종 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8)	50.0	12.5	12.5	25.0	62.5	37.5
	초등학교 중퇴	(8)	12.5	50.0	12.5	25.0	62.5	37.5
	초등학교 졸업	(52)	28.8	32.7	30.8	7.7	61.5	38.5
	중학교 중퇴 졸업 ~고등학교 중퇴	(132)	36.4	35.6	23.5	4.5	72.0	28.0
	고등학교 졸업	(332)	32.2	31.3	28.6	7.8	63.6	36.4
	직업학교	(7)	14.3	42.9	28.6	14.3	57.1	42.9
	대학 중퇴	(47)	31.9	34.0	23.4	10.6	66.0	34.0
	대학 졸업	(221)	35.3	38.0	23.5	3.2	73.3	26.7
	응답거절	(33)	39.4	33.3	21.2	6.1	72.7	27.3
거주 지역	서울	(330)	29.4	37.6	25.8	7.3	67.0	33.0
	인천/경기	(234)	32.5	32.9	27.4	7.3	65.4	34.6
	강원	(8)	25.0	25.0	50.0	0.0	50.0	50.0
	대전/충북/충남	(53)	35.8	34.0	24.5	5.7	69.8	30.2
	광주/전북/전남	(73)	47.9	32.9	17.8	1.4	80.8	19.2
	대구/경북	(86)	31.4	29.1	31.4	8.1	60.5	39.5
	부산/울산/경남	(56)	46.4	30.4	17.9	5.4	76.8	23.2
고용 형태	계약직, 기간제	(311)	34.4	37.0	24.4	4.2	71.4	28.6
	일용직, 임시직	(276)	36.6	34.4	22.8	6.2	71.0	29.0
	시간제 · 아르바이트	(27)	22.2	37.0	33.3	7.4	59.3	40.7
	파견, 용역, 도급	(131)	19.8	32.8	39.7	7.6	52.7	47.3
	특수고용	(95)	44.2	25.3	16.8	13.7	69.5	30.5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126)	31.0	35.7	27.0	6.3	66.7	33.3
	10-50명	(233)	35.6	35.6	21.9	6.9	71.2	28.8
	51-100명	(126)	27.0	42.9	25.4	4.8	69.8	30.2
	101-300명	(200)	32.5	27.0	32.5	8.0	59.5	40.5
	301명 이상	(139)	39.6	32.4	23.0	5.0	71.9	28.1
	무응답	(16)	37.5	37.5	12.5	12.5	75.0	25.0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54)	25.9	42.6	20.4	11.1	68.5	31.5
	90-119만원	(101)	29.7	42.6	24.8	3.0	72.3	27.7
	120-149만원	(158)	31.6	27.8	28.5	12.0	59.5	40.5
	150-199만원	(165)	35.8	33.3	26.1	4.8	69.1	30.9
	200-249만원	(147)	31.3	37.4	28.6	2.7	68.7	31.3
	250-299만원	(56)	30.4	32.1	28.6	8.9	62.5	37.5
	300-399만원	(74)	48.6	27.0	20.3	4.1	75.7	24.3
	400만원 이상	(73)	32.9	35.6	23.3	8.2	68.5	31.5
	무응답	(12)	50.0	25.0	16.7	8.3	75.0	25.0

<표 4-23> 정책대안 3: 선거일 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투표 허용

구 분		사례수 (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합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 체		(840)	37.9	37.1	19.3	5.7	75.0	25.0
성별	남성	(551)	40.3	36.7	18.1	4.9	77.0	23.0
	여성	(289)	33.2	38.1	21.5	7.3	71.3	28.7
연령	20대	(76)	38.2	35.5	19.7	6.6	73.7	26.3
	30대	(130)	32.3	44.6	19.2	3.8	76.9	23.1
	40대	(230)	37.8	37.4	20.0	4.8	75.2	24.8
	50대	(272)	39.7	34.9	18.4	7.0	74.6	25.4
	60세 이상	(132)	39.4	34.8	19.7	6.1	74.2	25.8
최종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8)	37.5	12.5	37.5	12.5	50.0	50.0
	초등학교 중퇴	(8)	25.0	62.5	0.0	12.5	87.5	12.5
	초등학교 졸업	(52)	38.5	25.0	28.8	7.7	63.5	36.5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132)	40.2	36.4	18.2	5.3	76.5	23.5
	고등학교 졸업	(332)	37.0	38.3	18.7	6.0	75.3	24.7
	직업학교	(7)	28.6	42.9	14.3	14.3	71.4	28.6
	대학 중퇴	(47)	36.2	29.8	25.5	8.5	66.0	34.0
	대학 졸업	(221)	37.6	41.2	18.1	3.2	78.7	21.3
	응답거절	(33)	45.5	30.3	15.2	9.1	75.8	24.2
거주지역	서울	(330)	36.7	37.9	20.3	5.2	74.5	25.5
	인천/경기	(234)	35.9	37.2	20.9	6.0	73.1	26.9
	강원	(8)	50.0	25.0	25.0	0.0	75.0	25.0
	대전/충북/충남	(53)	47.2	28.3	18.9	5.7	75.5	24.5
	광주/전북/전남	(73)	43.8	45.2	9.6	1.4	89.0	11.0
	대구/경북	(86)	34.9	34.9	20.9	9.3	69.8	30.2
	부산/울산/경남	(56)	39.3	35.7	16.1	8.9	75.0	25.0
고용형태	계약직, 기간제	(311)	39.2	38.3	17.4	5.1	77.5	22.5
	일용직, 임시직	(276)	38.4	33.7	21.4	6.5	72.1	27.9
	시간제 · 아르바이트	(27)	25.9	33.3	33.3	7.4	59.3	40.7
	파견, 용역, 도급	(131)	23.7	47.3	22.9	6.1	71.0	29.0
	특수고용	(95)	54.7	30.5	10.5	4.2	85.3	14.7
직장 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	10명 미만	(126)	40.5	36.5	19.0	4.0	77.0	23.0
	10-50명	(233)	39.1	33.9	20.6	6.4	73.0	27.0
	51-100명	(126)	33.3	40.5	20.6	5.6	73.8	26.2
	101-300명	(200)	34.5	40.0	20.5	5.0	74.5	25.5
	301명 이상	(139)	45.3	35.3	12.9	6.5	80.6	19.4
	무응답	(16)	12.5	43.8	31.3	12.5	56.3	43.8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54)	33.3	38.9	14.8	13.0	72.2	27.8
	90-119만원	(101)	37.6	40.6	19.8	2.0	78.2	21.8
	120-149만원	(158)	33.5	32.9	22.8	10.8	66.5	33.5
	150-199만원	(165)	46.1	34.5	15.2	4.2	80.6	19.4
	200-249만원	(147)	32.7	46.9	17.7	2.7	79.6	20.4
	250-299만원	(56)	42.9	33.9	19.6	3.6	76.8	23.2
	300-399만원	(74)	47.3	25.7	16.2	10.8	73.0	27.0
	400만원 이상	(73)	28.8	42.5	27.4	1.4	71.2	28.8
	무응답	(12)	41.7	25.0	33.3	0.0	66.7	33.3

<표 4-24> 정책대안의 우선 선호 비교

구 분		사례수 (명)	주민등록지 구·시·군내 설치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	선거일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투표 허용	기타
전 체		(840)	58.1	12.4	22.9	6.7
성별	남성	(551)	55.2	13.1	24.5	7.3
	여성	(289)	63.7	11.1	19.7	5.5
연령	20대	(76)	51.3	15.8	26.3	6.6
	30대	(130)	49.2	16.9	23.1	10.8
	40대	(230)	56.1	11.3	25.2	7.4
	50대	(272)	60.3	10.7	22.4	6.6
	60세 이상	(132)	69.7	11.4	17.4	1.5
최종학력	정규교육 미이수	(8)	50.0	12.5	0.0	37.5
	초등학교 중퇴	(8)	37.5	12.5	37.5	12.5
	초등학교 졸업	(52)	55.8	11.5	28.8	3.8
	중학교중퇴졸업 ~고등학교중퇴	(132)	68.9	11.4	15.9	3.8
	고등학교 졸업	(332)	61.1	9.6	22.3	6.9
	직업학교	(7)	57.1	0.0	42.9	0.0
	대학 중퇴	(47)	42.6	23.4	25.5	8.5
	대학 졸업	(221)	50.7	16.3	25.8	7.2
	응답거절	(33)	66.7	6.1	21.2	6.1
거주지역	서울	(330)	63.9	9.7	22.1	4.2
	인천/경기	(234)	58.1	11.5	21.4	9.0
	강원	(8)	50.0	25.0	25.0	0.0
	대전/충북/충남	(53)	52.8	13.2	26.4	7.5
	광주/전북/전남	(73)	52.1	17.8	24.7	5.5
	대구/경북	(86)	48.8	14.0	27.9	9.3
	부산/울산/경남	(56)	51.8	19.6	19.6	8.9
고용형태	계약직, 기간제	(311)	58.5	14.8	21.5	5.1
	일용직, 임시직	(276)	54.3	13.0	22.5	10.1
	시간제 · 아르바이트	(27)	48.1	18.5	25.9	7.4
	파견, 용역, 도급	(131)	67.2	5.3	22.1	5.3
	특수고용	(95)	57.9	10.5	28.4	3.2
직장내 비정규직 근로자수	10명 미만	(126)	53.2	17.5	25.4	4.0
	10-50명	(233)	56.2	13.3	23.2	7.3
	51-100명	(126)	56.3	8.7	26.2	8.7
	101-300명	(200)	64.5	8.5	20.5	6.5
	301명 이상	(139)	61.2	13.7	19.4	5.8
	무응답	(16)	31.3	25.0	31.3	12.5
가구 한달 수입	89만원 이하	(54)	48.1	11.1	33.3	7.4
	90-119만원	(101)	59.4	14.9	23.8	2.0
	120-149만원	(158)	70.9	10.8	9.5	8.9
	150-199만원	(165)	55.2	6.7	30.9	7.3
	200-249만원	(147)	55.8	16.3	21.8	6.1
	250-299만원	(56)	37.5	19.6	30.4	12.5
	300-399만원	(74)	55.4	17.6	21.6	5.4
	400만원 이상	(73)	64.4	8.2	23.3	4.1
	무응답	(12)	66.7	8.3	16.7	8.3

V. 정책적 제안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나타난 투표율은 2008년 국회의원선거 62.2%, 2010년 지방선거 55.4%로 2008년과 2010년 일반 투표율 46.1%, 54.5%와 비교하여 높은 편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치적 관심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또한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설문조사에서의 투표참여율은 과대투표(overreporting)가 일반적이기에 투표율이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표 5-1> 투표참여 불가능 이유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구 분		사례수 (명)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	임금이 (전액/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동료에게 미치는 피해 때문에	개인적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	기타
전 체		(164)	42.7	26.8	9.8	1.2	3.0	14.6	1.8
고용 형태	계약직, 기간제	(35)	37.1	14.3	14.3	0.0	2.9	22.9	8.6
	일용직, 임시직	(80)	27.5	47.5	8.8	1.3	3.8	11.3	0.0
	시간제 · 아르바이트	(1)	100.0	0.0	0.0	0.0	0.0	0.0	0.0
	파견, 용역, 도급	(28)	67.9	3.6	3.6	3.6	3.6	17.9	0.0
	특수고용	(20)	75.0	0.0	15.0	0.0	0.0	10.0	0.0

<표 5-2> 투표참여 불가능 이유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구 분		사례수 (명)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	임금이 (전액/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동료에게 미치는 피해 때문에	개인적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	기타
전 체		(210)	41.9	27.1	6.7	1.4	4.8	14.3	3.8
고용 형태	계약직/기간제	(44)	36.4	13.6	6.8	0.0	11.4	22.7	9.1
	일용직/임시직	(91)	24.2	52.7	9.9	1.1	3.3	8.8	0.0
	시간제 · 아르바이트	(3)	0.0	33.3	0.0	33.3	0.0	33.3	0.0
	파견/용역/도급	(44)	65.9	4.5	2.3	2.3	4.5	18.2	2.3
	특수고용	(28)	75.0	0.0	3.6	0.0	0.0	10.7	10.7

<표 5-1>과 <표 5-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자들 중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하여 투표하지 못하였다는 노동자가 2008년 선거에서 42.7%, 2010년 선거에서 4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이 (전액 혹은 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대답이 26.8%, 27.1%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중 75%(2008년 선거), 75%(2010년 선거)가 고용관계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 투표하지 못했다고 대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파견·용역·도급 노동자 중 이와 같은 대답을 한 응답자는 67.9%(2008년 선거), 65.9%(2010년 선거)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일용직·임시직 노동자의 경우 임금이(전액 혹은 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응답이 47.5%(2008년 선거), 52.7%(2010년 선거)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5-3> 응답자 직장의 선거일 유급 휴가·휴무의 보장여부

구 분	사례수 (명)	예	아니오
전 체	(840)	22.7	77.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회의원선거일과 지방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29]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상태의 불안과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고용주나 상사에게 투표권을 요구하지 못하여 투표참여의 권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귀하가 다니는 직장은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2.7%로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가 잘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30]

2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30)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표 5-4>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투표참여 보장에 도움이 되는가?

구 분	사례수 (명)	큰 도움이 된다	조금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종합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 체	(840)	28.0	19.3	32.7	20.0	47.3	52.7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가 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된다. 이는 무엇보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가 투표참여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7.3%(큰 도움이 된다 28%, 조금 도움이 된다 19.3%)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2.7%,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라는 대답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가 투표참여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43.3%가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더라도 고용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라고 하였고, 41.1%는 근로자가 법 내용은 잘 알고 있더라도 고용주에게 이를 요구하기 힘들어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가져오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5>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규정이 비정규직의 투표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근로자가 법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법 내용은 잘 알고 있더라도 고용주에게 이를 요구하기 힘들어서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더라도 고용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전 체	(443)	15.6	41.1	43.3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를 엄격한 적용을 위해서는 처벌기준이 좀 더 엄격해져야 하며, 법이 사업장에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방안을 고용노동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강구해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10조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 그러나 모든 사업장에서 법률 시행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 규정과 처벌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구체적 방안 - 선거관리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작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 - 이 필요해 보인다.

<표 5-5>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주에게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를 요구하기는 힘든 상황이며 요구한다고 해도 수용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 혹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고용주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 적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기명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 나아가 고발 및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를 개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대면) 상담 및 신고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이들의 선거참여에 대한 요구가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1)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표 5-6>「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규정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하다
전 체	(840)	36.3	63.7

<표 5-7> 「근로기준법」 제10조 규정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알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하다
전 체	(840)	36.0	64.0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 이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대한 인지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직선거법」제6조 제3항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6.3%에 지나지 않았다(<표 5-6>).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36%였다(<표 5-7>).

<표 5-8> 두 규정에 대한 교차분석

		「근로기준법」 제10조 규정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
		알고 있다	알고 있지 못하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 규정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246	59	305
	알고 있지 못하다	56	479	535
전체		302	538	840

<표 5-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질문에 모두 “알고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9.2%(59명)였으며 모두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57%(479명)로 나타나 이 규정에 대한 홍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고용주들에게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대해 충분히 인지시키고 실천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적극적 실시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투표 당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좀 더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선거제도상 선거일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근무를 위한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동활동을 위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이 선거 당일에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가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선거일이 법정휴일임에도 쉬지 못하고 있으며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등록상 투표소에서 투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선거인명부 활용을 통한 투표편의 제공 방안이 필요하다. 즉,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단위로 전산통합선거인 명부를 구축하도록 하고 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 5-9>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방안이 모색된다면 투표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 대답한 응답자는 85.7%로 나타나고 있으며, <표 5-10>에서 보듯이 투표시간 연장과 사전투표 허용보다 투표참여에 가장 도움이 될 방안이라고 대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9>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귀하의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합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 체	(840)	56.3	29.4	10.2	4.0	**85.7**	14.3

<표 5-10> 아래의 보기 중 귀하의 투표참여에 가장 도움이 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사례수 (명)	주민등록지 구·시·군내 설치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	선거일 투표시간 연장	선거일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투표 허용	기타
전 체	(840)	**58.1**	12.4	22.9	6.7

<표 5-11> 투표개시시간을 앞당기거나 투표마감시간을 뒤로 미루는 방법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한다면 귀하의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합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 체	(840)	33.6	34.2	25.7	6.5	**67.7**	32.3

다음으로 투표시간 연장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고려해야 할 방안이다. 현행 선거제도상의 투표시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궐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업, 서비스업, 영세사업자 노동자 등은 투표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투표시간에 투표참여가 힘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재·보궐 선거와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

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논의했듯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근무를 위한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한다고 해도 일용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들은 투표일에 시간을 내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들의 투표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투표제 도입과 부재자 투표제 완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표 5-12>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전에 일정기간동안 투표소를 설치하여 먼저 투표할 수 있게 한다면 귀하의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구 분	사례수 (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종합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 체	(840)	37.9	37.1	19.3	5.7	**75.0**	25.0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선거일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 전에 일정기간동안 투표소를 설치하여 먼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투표일에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없고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투표참여의 기회를 주는 방안이라 하겠다. 또한 현재 부재자 투표제의 신고요건 완화, 신고기간 연장, 부재자 투표소 설치범위 확대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부재자 투표소의 설치 범위를 2천인에서 1천인 이하로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32)]

32) 공직선거관리규칙 부재자 투표소 설치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8조(부재자투표소의 설치) ②구·시·군위원회는 법 제1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의 구역안에 거소를 둔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읍·면·동안에 하나의 부재자투표소만으로는 부재자투표자(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자를 말한다. 이하 같

VI. 결론

전통적 정치참여 결정요인들이 대의민주주의에 함의하는 바는 사회경제적 자원, 심리적 자원, 관계적 자원 등에 있어서의 불균형이 상호간의 상승적인 관계를 구성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참여 불평등의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선거정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유권자 집단의 정치참여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적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특정 집단에게서 행해지는 정치참여의 정도는 그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치환될 개연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경우에는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가 정치참여 불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집단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참여의 현실을 검토하고 참여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 이후에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은 무엇인지 제시해보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투표권이라는 국민의 권리 행사가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어렵다고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과거에 제대로 수행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적극적 협조와 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기술력을 통해 840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 실태에 관한 것이며, 두 번째는 투표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는 투표참여를 활성화시키기

다)의 투표를 마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인이상의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각각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읍·면·동안의 부재자투표예상자가 2천인미만인 때에도 지리·교통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의결로 투표관리관을 지정하여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치에 관련한 것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치적 관심은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해석상의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지만 조사 결과 나타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율은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여론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의 투표참여율은 고연령층일수록 그리고 고학력층일수록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형태"에 있어서 '일용직/임시직'과 '파견/용역/도급'의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에 있어서는 100명 이하와 300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갖고 있는 직장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101~3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장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이 나타나 이들의 투표참여에 고용조건과 관련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비교할 때 차이를 보여주는데, 일반 유권자 조사의 투표불참자들은 대부분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여 자발적 기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에서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의 빈도수가 거의 65%에 달하였고, 이러한 양상은 모든 사회경제적 변수들에서 공히 높게 나타났으며, '일용직/임시직'과 '파견/용역/도급'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선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자발적 선거기권 이유는 일반 유권자들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들에게서도 '정치적 무관심'이나 '선호후보 없음,' 그리고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다수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발적 기권에 있어서는 일반 유권자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고용조건과 경제적 이유로 인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

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이와 같은 결과는 고용조건이 투표참여에 있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두드러지게 겪고 있는 하나의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결국 이렇듯 특수한 장애물이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인 대의민주주의의 구현을 저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받는 노동자가 22.7%에 불과한 것은 매우 놀라운 결과다. 무려 77.3%의 노동자는 투표 참여에 있어 유무형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 특히, 일용직·임시직, 시간제 등의 경우 어느 정도 투표일 휴무를 보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파견·용역·도급직 종사자나 심지어 계약직·기간제종사자 중 절반 이상이 투표일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시사점이 크다. 비정규직에게 투표는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노동지위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제약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의 초석이 되어야 할「공직선거법」제6조 제3항과「근로기준법」제10조에 대한 회의적 시각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항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노동자가 절반을 훨씬 넘을 뿐 아니라(63.7%, 64%),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투표참여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절반이 넘었다(52.7%). 그 이유로 법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도 고용주에 이를 요구하기 힘들거나, 고용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 무엇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용자의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거나 근로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거나, 관련 법규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절반이 넘는 54.2%의 응답자들이 제도개선이나 관련 법 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답하였다.

응답자에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의 효용을 물은 질

문에는 선거일 투표시간 연장이나,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방안 보다, 주민등록지 구·시·군내 설치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 하는 방안이 훨씬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는 '시간이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다는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면에선 유권자의 주민등록에 의거 투표소를 일괄 할당함으로서 발생하는 불편이 상당함을 보여주며, 관련 개선책의 마련이 시급함을 나타낸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참여를 위해서는 이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불안정한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이들의 투표참여를 가로 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10조가 노동현장에서 엄격하게 준수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규정, 실질적인 집행방안,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도 요구된다.

한편 현실적 논의되어야 할 개선책으로는 선거구 단위 또는 구·시·군단위로 전산통합선거인 명부를 구축하도록 하고 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 자신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 전에 일정기간동안 투표소를 설치하여 먼저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사전투표제 실시 방안,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재·보궐 선거와 같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 있다. 그리고 부재자 투표제의 신고요건 완화, 신고기간 연장, 부재자 투표소 설치범위 확대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은 대의민주주의다. 대의민주주의는 인민주권(popular sovereignty)의 이념과 대의정부(representative government)라는 제도를 축으로 한다. 즉, 주권과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그 권력의 행사는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정부와 의회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주요 핵심 원칙은 국민이 선거라

는 기제를 통해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며, 선출된 대표는 위임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라 말할 수 있다. 특히, 국민들의 선거참여는 국가 의사결정을 위한 대표선출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선출된 대표에게 정통성(legitimacy)을 부여하는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선거참여가 유권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고용불안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집단은 비정규직 근로자라 말할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의 결여와 이에 기인한 정치참여의 불평등은 단순히 개인과 그 소속집단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영향력을 약화 혹은 배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정치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의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의 불안정을 가져오며, 더 나아가 참여와 대표성의 문제로 말미암아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치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소외받은 집단을 찾아내고,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이야말로 사회 안정과 건전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남훈. 2008.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경기 파주: 한국학술정보

은수미・오학수・윤진호. 2008.『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시스템 변화(II)』서울: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2011. “2011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비정규직 투쟁.” 이슈 페이퍼 2011-01

Bartels, Larry M. 2008.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Brody, Richard A. 1978. “The puzzle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America,” pp. 287-324 in Anthony King (ed), *The New American Political System*,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Burt, Ronald S. 2005. *Brokerage and Closure: An Introduction to Social Capit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Finkel, Steven E. 1985. “Reciprocal Effects of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fficacy: A Panel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9: 891-913.

Gartrell, David C. 1987. “Network Approaches to Social Evalu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13: 49-66.

Hirschman, Albert O. 1970. *Exit, Voice, and Loyali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Jacobs, Lawrence R. and Theda Skocpol. 2005. *Inequality and American Democracy: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Lear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Kymlicka, Will and Wayne Norman. 2000. *Citizenship in Diverse Socie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ewis-Beck, Michael S., William G. Jacoby, Helmut Norpoth, and Herbert F. Weisberg. 2008.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Lin, Nan. 2000. "Inequality in Social Capital," Contemporary Sociology, 29: 785-795.

McCarty, Nolan, Keith T. Poole, and Howard Rosenthal. 2006. *Polarized America: The Dance of Ideology and Unequal Riches*. Cambridge: MIT Press.

McClurg, Scott D. 2003. "Social Network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Role of Social Interaction in Explaining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6: 448-464.

Meltzer, Allan H. and Scott F. Richard.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914-927.

Norris, Pippa(eds). 1999.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utnam, Robert.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Rosenstone, Steven J. and John Mark Hansen.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Longman.

Schattschneider, E. E. 1960. *The Semisovereign People: A Realist's View*

of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Uslaner, Eric 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Verba, Sidney, Kay L. Schlo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부록> 설문문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객관적 실태파악 조사

ID (기재하지 마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와 **한국정치학회** 는 공동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객관적 실태파악 및 진단을 통해 투표권 행사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투표권 행사 확대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답변해주신 모든 응답내용은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며, 또한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설문 협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담당자

KSDC 조사연구팀	장대홍 팀 장	(02) 6011~8005	e-mail : jjangdae@ksdc.re
KSDC 조사연구팀	이은영 연구원	(02) 6011~8005	e-mail : pansy@ksdc.re.k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문1.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정치적 사건이나 선거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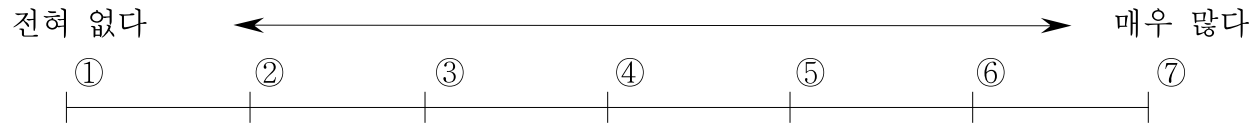

문2.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일 당시 귀하의 근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①___ 비정규직 **(☞ 문2-1로)** ②___ 정규직 **(☞ 문3으로)**
③___ 실업 **(☞ 문3으로)**

문2-1. **(문2에서 ①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신 분만)** 2008년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시 귀하는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①___ 투표했다 **(☞ 문2-2로)** ②___ 투표하지 않았다 **(☞ 문2-3으로)**

문2-2. **(문2-1에서 ① 투표했다고 응답하신 분만)**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였습니까?

①___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 문3으로)** ②___ 부재자 투표 **(☞ 문3으로)**

문2-3. **(문2-1에서 ②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___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문2-4로)**
②___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 문2-5로)**

문2-4. **(문2-3에서 ①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하신 분만)** 참여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___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 **(☞ 문3으로)**
②___ 임금이 (전액 혹은 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 문3으로)**
③___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 문3으로)**
④___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 문3으로)**
⑤___ 투표로 인해 동료에게 미치는 피해 때문에 **(☞ 문3으로)**
⑥___ 개인적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 **(☞ 문3으로)**
⑦___ 기타 (적어주십시오 :) **(☞ 문3으로)**

문2-5. **(문2-3에서 ②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신 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___ 직장 근무 때문에 피곤해서 (☞ 문3으로)
②___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 문3으로)
③___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 문3으로)
④___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여행, 경조사, 모임 등) (☞ 문3으로)
⑤___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 문3으로)
⑥___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 문3으로)
⑦___ 귀찮아서 (☞ 문3으로)
⑧___ 기타 (적어주십시오 :) (☞ 문3으로)

문3. 2010년 6월 2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일 당시 귀하의 근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①___ 비정규직 (☞ 문3-1로)　②___ 정규직 (☞ 문4로)
③___ 실업 (☞ 문4로)

문3-1. **(문3에서 ① 비정규직이라고 응답하신 분만)** 2010년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귀하는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①___ 투표했다 (☞ 문3-2로)　②___ 투표하지 않았다 (☞ 문3-3으로)

문3-2. **(문3-1에서 ① 투표했다고 응답하신 분만)**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였습니까?

①___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 (☞ 문4로)　②___ 부재자 투표 (☞ 문4로)

문3-3. **(문3-1에서 ②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신 분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___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문3-4로)
②___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 (☞ 문3-5로)

문3-4. **(문3-3에서 ①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하신 분만)** 참여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___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해서 (☞ 문4로)
②___ 임금이(전액 혹은 일부) 감액되기 때문에 (☞ 문4로)
③___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때문에 (☞ 문4로)
④___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 문4로)
⑤___ 투표로 인해 동료에게 미치는 피해 때문에 (☞ 문4로)
⑥___ 개인적 일로 참여가 불가능해서 (☞ 문4로)
⑦___ 기타 (적어주십시오 :) (☞ 문4로)

문3-5. **(문3-3에서 ②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신**

분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___ 직장 근무 때문에 피곤해서 **(☞ 문4로)**
②___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 문4로)**
③___ 정치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 문4로)**
④___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여행, 경조사, 모임 등) **(☞ 문4로)**
⑤___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 문4로)**
⑥___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 문4로)**
⑦___ 귀찮아서 **(☞ 문4로)**
⑧___ 기타 (적어주십시오 :) **(☞ 문4로)**

문4. 귀하가 다니는 직장은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①___ 예 ②___ 아니오

문5. 「공직선거법」제6조 제3항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①___ 알고 있다 ②___ 알고 있지 못하다

문6. 「근로기준법」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①___ 알고 있다 ②___ 알고 있지 못하다

문7. 투표참여 보장과 관련하여 5번과 6번과 같이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①___ 큰 도움이 된다 **(☞ 문8로)**
②___ 조금 도움이 된다 **(☞ 문8로)**
③___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문7-1로)**
④___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문7-1로)**

문7-1. **(문7에서 ③,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신 분만)** 상기 법 규정이 비정규직의 투표참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___ 근로자가 법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 문8로)**
②___ 근로자가 법 내용은 잘 알고 있더라도 고용주에게 이를 요구하기 힘들어서 **(☞ 문8로)**
③___ 근로자가 이를 요구하더라도 고용주가 근로자의 청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 문8로)**

문8. 비정규직 근로자의 투표참여 보장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___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 강화
②___ 비정규직 투표참여에 대한 고용자의 인식전환
③___ 투표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근로자의 노력
④___ 투표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나 관련 법 개정(예: 유급휴가 명시 등)

문9. 귀하께서는 다음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문9-1.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문9-2. 나에게 있어 투표만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①	②	③	④

PQ1. 현행 선거제도상 선거일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내에 설치된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귀하의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①___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②___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③___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___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PQ2. 현행 선거제도상의 투표시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궐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투표개시시간을 앞당기거나 투표마감시간을 뒤로 미루는 방법으로 투표시간을 연장한다면 귀하의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①___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②___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③___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___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PQ3. 현행 선거제도는 선거일에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사전에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전에 일정기간동안 투표소를 설치하여 먼저 투표할 수 있게 한다면 귀하의 투표참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①___ 큰 도움이 될 것이다
②___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③___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___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PQ4. 아래의 보기 중 귀하의 투표참여에 가장 도움이 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___ 주민등록지 구·시·군내 설치 투표소 중 어디서나 투표
②___ 선거일 투표시간 연장
③___ 선거일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전투표 허용
④___ 기타 (적어주십시오 :)

통계처리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SQ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___ 남성 ②___ 여성

SQ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음)

①___ 정규교육 미이수
②___ 초등학교 중퇴
③___ 초등학교 졸업
④___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⑤___ 고등학교 졸업
⑥___ 직업학교
⑦___ 대학 중퇴
⑧___ 대학 졸업
⑨___ 응답거절

SQ4. 귀하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과 근무지가 소재한 구·시·군이 일치하십니까?

①___ 일치
②___ 불일치

SQ5.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이십니까?

①___ 서울
②___ 부산
③___ 대구
④___ 인천
⑤___ 광주
⑥___ 대전
⑦___ 울산
⑧___ 경기
⑨___ 강원
⑩___ 충북
⑪___ 충남
⑫___ 전북
⑬___ 전남
⑭___ 경북
⑮___ 경남
⑯___ 제주

SQ6. 귀하께서는 결혼하셨습니까?

①___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다
②___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다
③___ 이혼했거나 별거하고 있다
④___ 아직 결혼한 적 없다(미혼)
⑨___ 응답거절

SQ7. 귀하의 고용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①___ **계약직,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고용이 자동 종료되는 고용형태, 계약의 반복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

②___ **일용직, 임시직:** 고용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는 경우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혹은** 일시적으로 생긴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용되는 경우

③___ **시간제(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노동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소정 노동시간보다 짧은 경우

④___ **파견, 용역, 도급(하청)**: 고용업체(임금 또는 급여 지급업체)와 근무하고 있는 업체(직장)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임금(급여)은 원래 소속된 업체(파견업체)에서 받지만 근무는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혹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용역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⑤___ **특수고용**: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못하면서, 또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만 노동제공의 방법, 노동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경우

SQ8. 현재 직업에 근무하신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개월수로 응답 〔 _____ **개월**〕

SQ9. 현재 귀하가 다니는 직장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①___ 10명 미만
②___ 10-50명
③___ 51-100명
④___ 101-300명
⑤___ 301명 이상

SQ10. 선생님 댁의 전체수입은 한달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①___ 89만원 이하
②___ 90-119만원
③___ 120-149만원
④___ 150-199만원
⑤___ 200-249만원
⑥___ 250-299만원
⑦___ 300-399만원
⑧___ 400만원 이상

♣ 오랜 시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